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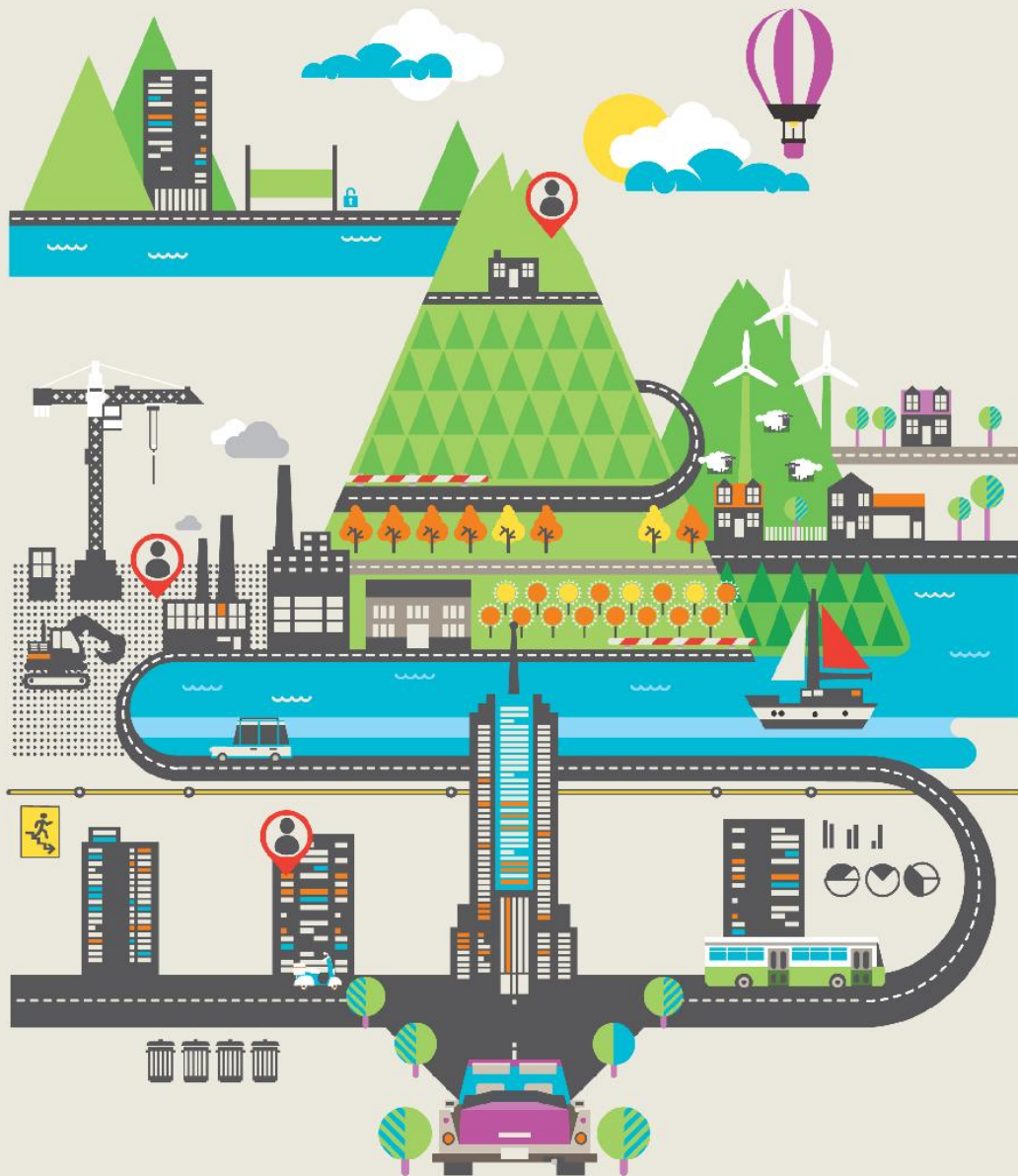
2014 창간호

Vol.0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협회로 거듭날 것이며, 전문건설업과 우리협회(코스카레터)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드립니다.

코스카레터

KOSCA + NEWSLETTER



01

회장님
인사말
GREETING



“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건설산업은 문화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기술과 융합·창조
라는 새로운 고부가가치로 변모해야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



greeting

특히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건설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그 중심에는 장인정신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부산전문건설인이 있었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의 중심에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협회가 되기 위하여 부산전문건설 소식지 “코스카레터”를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코스카레터”는 21세기 새로운 부산의 건설문화를 창조하고 부산건설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모두의 경영과 실무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코스카레터”는 다음과 같은 발간정신을 가지고 지역건설산업을 선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부산전문건설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임과 동시에, 전문건설업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부산사회가 지역사회에서 경제단체로서 역할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사항을 회원사에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산전문건설인의 윤리경영과 책임경영, 그리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유도하여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과 함께 기업경영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설법령 및 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협회 주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홍보 및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신기술·신공법 등 수준 높은 건설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여 부산전문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협회가 ‘부산전문건설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고민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시대 발주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업역확대를 위한 협회의 활동을 알리는데 충실하겠습니다.

소식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회원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스카레터”가 부산전문건설인들의 위상을 드높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병 철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02

축사
MESSAGE

“부산광역시회 소식지 ‘코스카레터’ 창간을 전국 3만여 회원사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코스카레터’가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단결된 여론을 형성하고 회원사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읽을거리가 가득하고 실속 있는 지면으로 독자들의 관심과 기대에도 부응했으면 합니다.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감부족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시장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회원사들의 사업 환경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건설경기가 조금씩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앙회에서도 회원사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좀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앙회는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전문건설업계에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오니 회원사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코스카레터’ 창간을 위해 애써 오신 김병철 부산시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코스카레터’의 힘찬 도약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message

“1985년 창립된 이래 부산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해 오신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병철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협회의 소식지인 ‘코스카레터’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문건설업은 국내에서 지역의 경제성장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역 경제발전의 큰 주축을 담당해 왔으며, 또한 세계 곳곳의 건설현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국가기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산업은 글로벌 경제 위축, 국내 SOC 산업 감축,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안팎으로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시를 비롯한 관련 건설협회나 단체가 민관협력체제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모색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운 지역건설산업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항상 귀담아 들으며 지역 전문건설업체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지역건설업체들이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 협회에서도 신기술 도입을 비롯한 자구책 마련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건전한 건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산지역 전문건설인들의 열린 광장이자 소통의 한마당이 될 ‘코스카레터’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02

축사 MESSAGE

“부산지역 전문건설업계 소식지이자 대변지로 자리매김할 ‘코스카레터’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 성 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아울러,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전문 지식 및 정보의 습득과 교류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코스카레터’는 회원 기업 발전과 화합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문건설업 발전과 회원 간 교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카레터’의 창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며, 최신 정보는 물론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동정도 가득 담아 회원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한편으로 최근 지역 건설경기 위축으로 회원업체 여러분의 어려움도 많으리라 봅니다. 특히, 건설경기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지역 상공계에서도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 대형업체들의 수주가 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비상한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코스카레터’의 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며, 전문건설업계의 공동 관심사를 모으고 널리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코스카레터’가 보다 알찬 내용과 다양한 정보로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선도하고 뒷받침하는 방향타이자 대들보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전문건설업계의 무한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essage

02

축사
MESSAGE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뉴스레터인 '코스카레터'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1985년 10월 창립 이래 1,600여 회원사의 친목도모는 물론 전문건설업의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코스카레터'는 이 같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새로운 커뮤니케이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코스카레터' 창간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건설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스카레터'는 무엇보다 안전건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안전이 무너지지 않을 때 벗어날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재앙을 너무나 생생하고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생명입니다. 안전은 귀찮은 것이 아니고 나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입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작은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시간과 돈도 투자해야 합니다. '대충' '빨리빨리' '설마' '다음에'는 안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안전문화가 우리 건설 현장에 더욱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코스카레터'가 뛰어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녹색건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근래에는 녹색건설이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부상해 녹색건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건설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었습니다. 건설업은 제조, 장비, 시공, 설계 등 복합적으로 이뤄져 다른 산업과 연계관계가 많아 녹색경영 확산이 매우 효과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업종입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고 녹색경영에 대한 의지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코스카레터'가 회원사들이 녹색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터즈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경대학교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와 손잡고 미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토목공학과가 있습니다. 이미 80년 전부터 전문건설인을 양성하여 우리나라 건설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우리 대학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인류복지를 실현시키는 제반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도로, 교량, 터널, 지하, 항만, 댐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구조물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우수 전문인을 양성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믿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미래는 현재보다 나을 것이다.' '내겐 그렇게 만들 저력이 있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장애물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코스카레터'가 전문건설업계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메신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코스카레터'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코스카레터'가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고 21세기 새로운 건설문화 창조에 앞장서는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색건설·안전건설의 길잡이 되길”

김영섭
부경대학교 총장



CONTENTS

KOSCA LETTER Vol.1

코스카레터 제1호 창간호

PART 1

- 1. 회장님 인사말 02
- 2. 축사 04
 - 표재석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 허남식 - 부산광역시장
 - 조성제 -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 김영섭 - 부경대학교 총장
- 3. 협회 소개 10



2014년 Vol. 01 창간호

발행인	회장 김병철
편집인	사무처장 정기화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디자인책임	박지훈, 서수민, 김은옥, 장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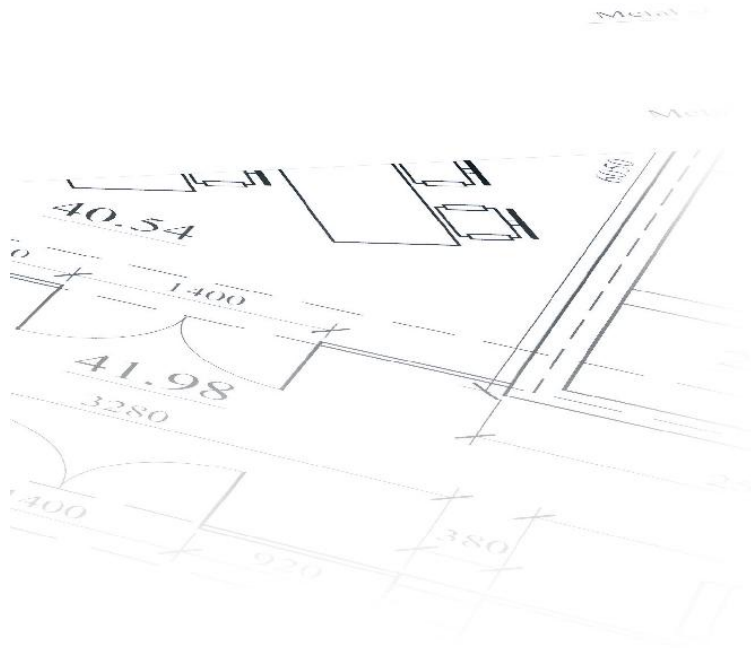


PART 2

- 4. 협회 소식 11
- 5.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16
- 6. 신기술 소개 - '지반 차수보강 그라우팅'PCF공법 20
- 7. SPECIAL01 - 쉬어가는 유머 22
- 8. 건설산업정보 PART 1. 24
- 9. SPECIAL02 - 숫자로 보는 부산 10년 36
- 10. 건설산업정보 PART 2. 38
- 11.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52
- 12. 회원사 질의·응답 54
- 13. 건설정책연구보고서 57
- 14. SPECIAL03 - 그것이 알고 싶다 60



62



PART 3

- 15. 회원사 탐방 - (주)에이비엠그린텍..... 62
- 16. 회원사 현황..... 64
- 17. 협회 집행부 소개..... 66
- 18. SPECIAL04 - 소통하는 문화공간..... 70
- 19. SPECIAL05 - 건강지킴이..... 74
- 20. 협회 CI소개..... 79



16



12



With KOSCA! In the world!

꿈과 희망을 짓는 건설!

미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도약을 KOSCA부산광역시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설립목적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6년 10월 15일 설립된 전문건설사업자 단체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건설산업 관련제도의 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

1.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및 시공능력평가 산정·공시
2. 건설업자 종합정보 관리(협회의 전산망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과 연결되어 있음)
3. 건설공사입찰에 필요한 경영상태평가확인서 및 건설공사 실적신고 확인원 등 각종 증명명 발급
4. 건설업 등록사항 종합 정보관리
5. 건설업의 신규·양도양수·합병·상속 회사분할·분할합병·건설업 경신등의 종합정보 관리
6. 인정가능사의 경력증 발급 및 경력 관리
7. 건설기술자(기술계·기능계)의 종합정보 관리
8. 건설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경영상태 평가
9. 하도급 적격심사 및 추천서 발급 등
10. 건설공사 입찰정보·건축물 차공정보연간 발주계획정보, 종합건설업체 수주정보등의 조사관리
11. 전문건설업과 도급공사 실태관리
12.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접수(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
13. 발주 기관·일반건설업체에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지원

협회사업

우리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사업 및 특별사업, 그리고 회원 권익을 위한 사업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8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위탁사업, 건설공사 입찰에 필요한 경영상태 평가 등 정부의 중요한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자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우리 협회의 지원을 받지못하거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협회는 전문건설업에 공통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과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연구와 개선건의
- 건설업 공정거래제도의 확립을 위한 분쟁의 조정, 중재
- 건설업관련법령에 의한 수탁사업 및 정부의 자문에 응함
- 전문건설업에 관한 강습회 등 홍보활동
- 전문건설업체의 해외진출방안 연구·지원
- 건설업 관련 국제기관 및 외국건설단체와의 국제협력 관계 증진
- 건설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제공 및 보급
- 전문건설업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및 이에 필요한 부설기관(시설)의 설치·운영

2. 협회는 업종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도
-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와 조사연구
- 업종별 고유의 권익신장 및 전문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발간 및 지원사업
- 건설기자재 가격 및 건설노임의 시세 등 건설업에 관한 조사통계
- 우수건설기자재의 추천 및 전시사업

3. 협회는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신문의 발행과 회지 등 정기비정기 간행을 발간
-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사업
- 회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공제사업
- 기능사 경력인정 관리사업



제행사

협회 소식



2014년 신년인사회 개최

우리시회는 1월 7일(11:30, 부산전문건설회관 3층) 제10대 대표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병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 행정기관과 돈독한 유대관계로 회원사 수주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1,600여 회원사에는 "청마의 진취적인 기상으로 희망찬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는 신년메세지를 전하였다.



부산전문건설인 2014년 제1회 단합산행 개최

우리시회는 3월 14일 제10대 대표회원 및 제위원들의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정산 산행을 가졌다. 이번 산행은 부산진구 초읍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 정문에서 출발하여 성지곡수원지를 거쳐 만덕 민속마을까지 이동하는 코스로 산행하면서 등산로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자연보호도 함께 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2014년 건설안전기원제 개최

우리시회는 4월 7일(14:00) 황령산봉수대에서 김병철 회장을 비롯한 제10대 대표회원 및 자문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00여 회원사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무사안일을 기원하기 위한 '2014년 건설안전기원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전문건설업체의 발전과 건설현장 무재해를 기원하는 모듬북 공연도 함께 펼쳐졌다.



협회 소식

제회의



회장단 회의 개최

우리시회는 2월 11일(11:00, 우리사회 회장실) '2014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9회 정기총회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운영위원회의 개최

우리시회는 2월 18일(10:00, 우리사회 회의실) 운영위원 및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심의하면서, 제29회 정기총회 포상대상자 선정과 2014 건설의 날 포상후보자를 결정하였다. 그외에도 회장 자문기구인 제위원회 운영 내규와 각 위원회별 위원 위촉동의의 건도 함께 의결하였다.



제29회 정기총회 개최

우리시회는 2월 27일(11:00, 부산전문건설회관 3층) 중앙회 구자명 상임부회장, 서병수 국회의원, 시·도 회장 등 많은 내빈과 대표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김병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제도를 개선하고 회원사 일감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협회의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우리사회 제2의 도약을 위해 회장의 자문기구인 기획혁신위원회, 고충(애로) 해결위원회,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를 두고 1,600여 회원사를 위해 실질적으로 일하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산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위해 노력한 발주기관과 회원사의 화합과 협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회원사를 표창하면서 우리사회 2012년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업종별 운영분과위원회의 개최

우리시회는 1월 8일(우리시회 회의실) 17개 업종별 운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병철 회장은 각 업종별로 제10대 업종별 분과위원장을 선출하면서, 17개 분과위원장들로부터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업종별 분과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장 및 인준서 수여식 개최

우리시회는 2월 11일(12:00, 서면 골든뷰 뷔페) 회장단 및 자문위원, 분과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업종별 분과위원장 인준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수여식에서 김병철 회장은 자문위원에 위촉장, 분과위원장에 인준서를 수여한 후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위원회 간담회 개최

우리시회는 3월 27일(11:30, 서면 골든뷰 뷔페) '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병철 회장은 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각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은 김경식(기획혁신위원장), 정석봉(고충(애로)해결위원장), 최상대(사회적책임경영위원장)를 호선하였고, 협회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강습회

개정 하도급법령 강습회 및 무료상담 개최

우리시회는 3월 24일(14:00,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하도급법령에 대한 강습회와 무료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강습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박국연 사무관이 부당특약 금지 등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과 심사지침, 부당특약 유형별 피해사례와 예방방법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부산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노현제, 장영욱 조사관은 참석한 회원사들이 원사업자들의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대처방법과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상담을 하였다.

협회 소식

유관기관 간담회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간담회 개최

우리사회 회장단은 2월 13일(12:00, 미락)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성덕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들과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사회 김병철 회장은 간담회에서 중·소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과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자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건설공사 품질향상, 그리고 저가하도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건설공사 설계시 공사규모, 지세별·지형별 공사현장조건 등을 감안한 설계 품을 현실화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성덕주 본부장은 "초저가 하도급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근절과 종합·전문건설업자의 동반성장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면서, 전문공사 품의 현실화를 위해 설계시 품의 할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간담회 개최

우리사회 회장단은 3월 17일(12:00, 사미헌) 부산광역시 임혜경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우리사회 김병철 회장은 "중·소 부산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를 요청하면서 전문건설업 업역보호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3억미만 복합공사는 전문공사로 발주하고 전문건설공사 설계 품을 현실화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부산광역시 임혜경 교육감은 "초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확대하고, 건설공사 설계시 품의 현실화를 약속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간담회 개최

우리사회 회장단은 3월 27일(16:30, 해운대구청장실) 부산광역시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을 비롯한 건설관계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사회 김병철 회장은 "중·소 부산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와 엘시티 등 해운대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하였다.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초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확대하고, 해운대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많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복합공사에 대해서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주된 전문공사로 발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장 간담회 개최

우리사회 회장단은 4월 9일(18:30) 부산광역시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건설관계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사회 김병철 회장은 “중·소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과 건설공사 품질향상·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와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3억원 미만의 복합공사에 대하여 주된 전문공사로 발주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요청” 하였다. 이에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은 “초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과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적극 확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많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제도의 폐지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부산광역시 건설관계관 간담회 개최

우리사회 회장단은 4월 11일(12:30) 부산광역시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건설관계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사회 김병철 회장은 “부산지역 공동주택에서 건설업무등록자가 도급·시공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구·군에서 해당지역 공동주택에 문서를 시달하여 줄 것과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하였다. 이에 조승호 건축정책관은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건전한 건설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시 건설업을 등록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군을 통해 부산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문서 시달을 약속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많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건설공사 수주 지원 및 제도 개선사업

공공기관 거래시 애로 및 불편사항 중앙회 건의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추가공사 강요 금지 우리사회, 발주기관 거래시 애로 및 불편사항 개선 건의

우리사회는 1월 23일 회원사가 공공기관과 거래시 애로 및 불편을 겪고 있는 설계서에 미반영된 추가 공사 강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미반영, 건설공사 설계시 고의적인 단가 인하 등의 부당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중앙회를 통하여 정부기관에 건의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추가 작업 물량 발생 시 건설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후 설계변경토록하고 있으며(기획재정부 예규 제164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간접공사비 조정 필요시에 실비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의무화(기획재정부 예규 제164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항)하고 있으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추가 물량분을 설계변경 없이 구두 작업지시 후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건설업체에게 전가하고,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를 불인정하거나 건설공사 설계시에 고의적으로 단가를 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경영상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정부기관에서 각 발주기관에 공정성을 가지고 부당하게 계약상대방인 건설업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건의한 것이다.

지역기업 활로 모색 간담회 건의자료 등 통보

부산경제 도약 및 지역기업 활로 모색 간담회 부산광역시에 부산전문업체 하도급참여 확대 건의

우리사회는 부산상공회의소가 2월 7일 주최한 「부산경제 도약 및 지역기업 활로 모색 간담회」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공사에 대한 계약심사를 폐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하여 줄 것과 부산지역 대형건설현장에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정부와 부산광역시에 정책을 주문할 것을 요청했다. 전문공사는 종합공사와 달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단일 공사이므로 계약심사로 인한 공사비삭감은 건설공사의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발생, 부실공사로 이어지므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를 폐지하고, 또 부산지역에서 발주되는 공공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70%이상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담당 공무원의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설산업 불공정관련 개선 중앙회 건의

우리사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대상 축소해야

우리사회는 2월 7일 건설산업 불공정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을 축소하여 줄 것을 중앙회를 통하여 정부기관에 건의하였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6호, 2014. 2. 6)에서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토록 면제대상에서 제외(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2항,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하고 있으나, 하도급법에서는 아직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회사채평가 A0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공정거래위원회 고 시 제2013-05호(2013. 11. 6)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하고 있어, 건설산업의 불공 정한 규정에 해당되므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도 건설법과 동일하게 신용평 가기관에서 실시하여 우수한 등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체의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토록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 및 세정 개선과제 제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 취득세 면제, 종업원분 사업소세 면세기준 확대 건의

우리사회는 3월 5일 하도급대금을 부동산으로 변제 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줄 것과 건 설업체의 경우 종업원분 사업소세 면세기준을 확대하여 줄 것을 부산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정 부기관에 건의하였다. 하도급대금을 부득이 대물 변제(하도급법 제17조, 동 법 시행령 제9조의 4) 받은 전문건설업자는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대물로 받은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재차 매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하도급자에게 납부토록하는 것은 하도급대 금을 감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하도급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가 면제(3년 이내에 미매각시 취득세를 추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지 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신설) 또한,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 등을 포함시켜 종업 원 수가 월 50명 초과 고용한 사업주는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납부(지방세법 제84조의2 ~ 제 84조의4)토록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매일 일용근로자들이 이직·교체되고 있어 타 산업(제조업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불이익 또는 부담으로 작용함으 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면세기준을 현행 종업원수 50명 이하에서 종업원수 100명 이하로 개 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설공사 수주 지원 및 제도 개선사업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 부당행위 근절 건의

월레비,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 과도하게 요구

우리사회에서는 종합건설업체들이 임차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행위로 하도급 참여중인 전문건설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들의 부당요구 행위로 공사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회원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사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에게 매월 사용료 명목으로 정기적인 월레비를 요구하거나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준법운행을 내세우거나 연장근무 등을 하지 않겠다고면서 타워크레인 운전을 거부하고 있어 하도급공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종합건설업체들이 타워크레인 임차 후 사용(운전)에 따른 책임과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전문건설업체는 타워크레인 운전자를 고용 하였거나 타워크레인 임대차 관계 등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사회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형 종합건설업체 164곳에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시 임대차계약서상 타워크레인 기사의 시간외 근무수당, 조기출근수당, 휴일근무수당, 월레비 등 모든 수당에 대한 사항을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고 하도급업체에게 이와 별도의 각종 수당 요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문화 해 줄 것과 부당행위 발생시 종합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게 기사 변경 및 부당행위 방지를 요청하거나 시정조치하고, 공사현장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협회 중앙회에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지역 공동주택의 건설업무등록 시공 근절 건의

건설업 무등록자의 입찰참가 제한해야

우리사회는 4월 25일 부산지역 공동주택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해당 건설업을 등록된 건설업자만 입찰참가 자격을 주어 입찰 및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하여 줄 것을 부산광역시에 건의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2013. 12. 30)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은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이용하여 입찰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자는 해당 건설업을 등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부산지역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방수공사, 재도장공사, 포장공사, 조경식재공사(전정작업포함), 승강기설치 및 보수공사 등을 시공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도 입찰참가 자격을 주는 등 건설거래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어 이의 근절을 부산광역시에 건의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시 건축물철거공사 분리발주 건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시 건축물철거공사 부산지역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 참여해야

우리시회는 4월 25일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선행되는 기존건축물 철거공사를 분리발주하여 부산지역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가 도급 받을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조합”에 적극적인 권장과 함께 행정 지도하여 줄 것을 부산광역시에 건의하였다.

우리시회는 최근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선행되는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의 대부분을 서울 등 타지역 대형일반건설업체가 재개발·재건축공사와 함께 도급받음으로써, 그들의 연고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들에게 하도급하여 부산지역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들은 철거공사 수주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지역자금 역외유출로 부산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산지역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가 철거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산지역 건설장비 임대업체의 동반 성장과 함께 부산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 효과에도 도움이 되는 등 부산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



신기술 소개



부산지하철 2호선 2단계 230공구 실드터널 보강

PCF공법
친환경 시공사례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지반보강

‘지반 차수보강 그라우팅’ PCF공법

실리카졸계 약액을 이용한 친환경 주입공법으로 내구성 우수, 공사비 절감효과까지 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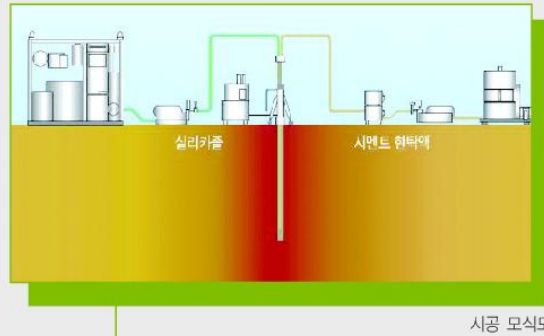
최근 국내에서는 약액주입공법이 더 이상 보조공법이 아닌 영구적인 공법으로 인식되어 새로운 주입재의 개발과 시공기술에 대해 수많은 연구개발을 해오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유리계 약액은 차수효과가 크고 침투성은 양호하나 다른 주입재에 비해 고결토의 강도가 낮다. 이에 시멘트를 병용하여 다수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물유리의 알칼리 용탈에 의한 환경오염은 물론 주입재의 내구성 저하를 일으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에어패커 또는 핸들패커로 실리카졸계 약액을 지반에 주입하는 약액주입 공법’으로 풀이되는 PCF(Packer Clean Firm)공법은 건설신기술 제592호 지정된 기술로 기존 물유리계 주입약액의 용탈현상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와 토질, 수질의 환경오염 문제를 제거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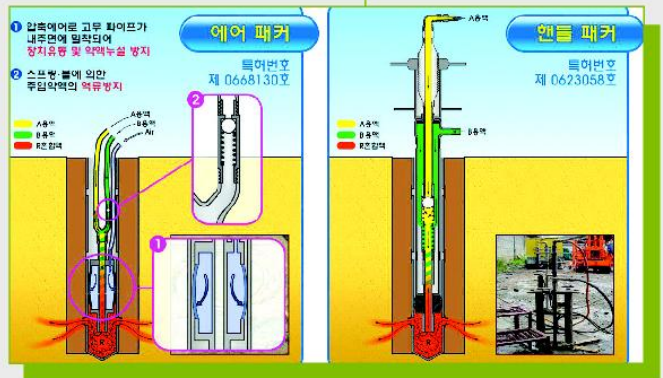
PCF공법은 건설현장에서 자동 줄믹서(Sol-Mixer)로 생산한 실리카졸 용액과 시멘트 현탁액을 배합해 겔타임(시멘트 응결시간)이 몇초대에 불과한 실리카졸계 약액을 만드는데서 시작된다. 여기에 약액의 주입효과를 높이기 위해 역류방지 및 누수방지 장치가 장착된 에어패커 또는 핸들패커를 이용해 저압으로 지반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무공해성 약액인 실리카졸은 시멘트의 초고속 응결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지반 내 지하수나 유입수에 대해 완전한 차단막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하천이나 해안가의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차수 시공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또한, 현장에서 단순한 설비로 직접 약액을 제조,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30%이상 절감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형겸
지산특수토건(주) 대표이사



PCF공법 시공 모식도
및 주입장치



주입장치

PCF공법의 가장 큰 장점은 부산지하철 2, 3호선을 시작으로 서울지하철,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을 포함하여 현재에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대대구간, 북항대교 ~ 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현장에 이르기까지 총 40여개 현장에 적용 실적 있어 시공성에 대한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개발자인 지산특수토건(www.ji-san.com, 대표 김형겸)은 이 공법으로 대통령표창과 국토교통부 및 부산광역시장, 최근 중소기업청장 표창등 총 7차례의 표창을 수상했다. 김형겸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이후 "1990년대 초부터 지하철과 고속철도, 대형 터널 등 많은 지반보강 공사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성, 시공성이 높은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운을 띄우면서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벤처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선진경영 기법으로 미래형 초우량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거리에서 거지가 사람들에게 애처롭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말했다.

“멀쩡한 양팔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일을 하지 않고 구걸을 하는 거죠?”

그러자 거지는 정색하며 말했다.

“돈을 주기 싫으면 싫은 거지 왜 양팔이 있네 없네 하는 거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말했다.

“아니, 당신이 멀쩡하니까 구걸이 아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려고 사느니는 뜻이었소”

“그럼 당신이 던져주는 동전 몇푼 받겠다고 나더러 이 양팔을 잘라버리란 말이요?”

거지의 변명



독수리 부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 참...

어느 산골에 독수리 부자가 살았다.
아들독수리는 아버지독수리가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기품 있고 용맹스러우며 빠르기가 이를 데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독수리 부자 위로 제트기 한 대가 “쌩” 하고 날아갔기 때문이었다.

아들독수리가 아버지독수리에게 말했다.

“에이, 아버지 별거 아니네”

아버지독수리는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했다.
아버지독수리는 화가 나서 아들 독수리에게 말했다.

“임매! 나도 공자에 불붙으면 더 빨라”

흔한 착각들

과연 화장만 한다고 해서
이뻐보일까?? ㅎㅎㅎ

- 아줌마** - 화장하면 다른 사람 눈에 예뻐보이는 줄 안다
- 연애하는 남녀** -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 시아머니** -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엄마를 먼저 챙기는 줄 안다
- 장인, 장모** -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 관심 없는 줄 안다
- 남자** - 못생긴 여자는 고시기 쉬운 줄 안다
- 여자** -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면 관심있어 따라오는 줄 안다
- 부모** - 자식들이 나이들면 효도할 줄 안다
- 육군 병장** -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 아가씨** - 자기들이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 회사 사장** - 종업원들은 쫓으면 다 열심히 일하는 줄 안다
- 남편** -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다
- 아내** -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 관심 없는 줄 안다
- 고마** - 울고 떼스면 다 되는 줄 안다
- 엄마** - 자기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 대학생** - 철 다 든 줄 안다. 대학만 졸업하면 앞날이 확 필 줄 안다



건설산업정보

PART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면제대상 축소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면제대상을 축소하는 내용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4. 2. 5) 및 시행규칙(2014. 2. 6)을 개정·공포하고 2014. 2. 7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건설공사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건설분쟁 조정의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면제대상을 축소하여 기존 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 중 “회사채 평가 A이상 건설업체”도 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개정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5050호, 2014. 2. 5】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규정 법률 상향 및 건설분쟁 조정 신청시 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13. 8. 6)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 개정

-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규정 삭제(법률로 상향) (제25조)
-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 (제66조, 제68조제2항, 제76조)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신설(별표7, 2. 개별기준 하목)
(위반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4. 2. 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면제대상 축소 (제28조)

- 보증서 발급 면제대상 중 “회사채 평가 A이상 건설업체” 제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양식 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 (별지 제27호)

※ 제28조는 ‘14. 8. 7일부터 시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공포 발주처, 사업계획단계 때 분리발주 가능 여부 검토

정부는 2013. 12. 30일 건설공사 분할·분리발주 방안과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후 2014. 1.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건설공사 분할·분리발주 허용대상을 구체화해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이나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를 추가하고, 발주처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 당초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던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범위는 2년간 유예했으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5033호, 2013. 12. 30】

1.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2조)

-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위반해 포탈·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등 (*시행일 : '14. 2. 14)

2. 여성기업의 1인견적 소액수의계약 대상 확대(제30조)

-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 확대 (현행) 2천만원 → (개정) 5천만원

3.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규정 개정(제51조)

- 단가계약에서 일부 계약을 미이행할 경우 계약보증금 중 이미 납품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하고 국고귀속토록 개정

4. 계속비 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개정(제6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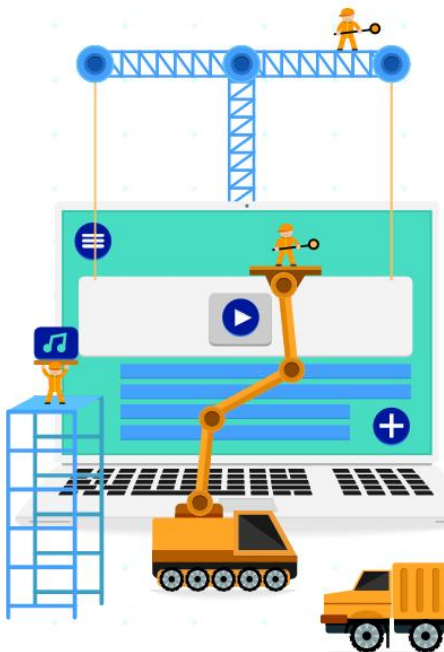
- 계속비 공사에서 부분 완공된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부분 완공된 시기부터 기산토록 개정

5. 공사의 분할·분리발주 관련규정 명확화(제68조)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서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분리발주 허용대상을 구체화함
-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 목적물, 시공시기, 시공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를 추가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할·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토록 함

6.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시기 2년 유예(부칙 제1조)

- '14. 1. 1일부터 확대(공사금액 300억원 → 100억원이상) 예정인 최저가낙찰제를 '16. 1. 1일부터 확대 시행토록 2년간 유예



국가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6호, 2014. 1. 10】

1.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
 - 500억원이상 → 최저가낙찰대상공사인 300억원이상
2. 표준품셈 및 법정 기준가격 준수조항 도입(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조, 제5조)
 -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비용 등 준수
 - 일정율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은 사전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 준수
3. 과도한 선금지급 개선(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이하 신청시 신청한 금액대로 지급
4. 발주처 요청 설계변경시 변경당시 실적공사비단가 적용공사 확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및 부칙)
 - 최저가낙찰공사 → 실적공사비 적용된 모든 공사
5.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적격심사기준 별표)
 - (현행)최근 3년 → (개정)최근 5년
6. 최저가공사의 공동도급시, 구성원의 입찰금액 적정 계상 규정 도입(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기준 제5조)
7. 공동계약방식에서 공사규모에 따른 구성원수 및 지분율의 탄력운영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 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업체 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공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8. 신기술공사 적정가격 보장(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하도급대금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 예정가격×낙찰률×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기준(82%)+기술사용료
9. 입찰서류 허위·부정 제출 시 해당계약 해제·해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7호)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시기 조정(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입확인서 등이 준공대가 지급이후 발급될 경우 별도 정산 가능



건설산업정보

PART 1.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시행 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적격심사 시공경험 기준 '최근5년'으로 공동도급 대표자 심사 결격사유 추가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가 1월 10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달청도 이를 반영해 적격심사기준 등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시회는 개정 주요내용을 1월 21일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조달청은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해 조건을 완화하고, 공동도급 대표자의 적격심사 결격사유에 부정당업자 제재와 입찰무효를 추가했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대상을 '계열회사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명확히 해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시설공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조달청 시설총괄과 - 184호(2014. 1. 13) 및 조달청 기술심사과 - 185호(2014.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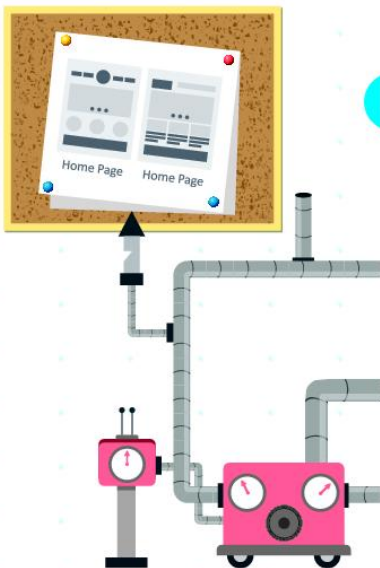
1.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4 ~ 별지7)
 - 최근 3년 → 최근 5년
2. 공동도급 대표자의 적격심사 결격사유에 부정당업자 제재와 입찰무효 추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2조 제4항)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대상 변경(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 계열회사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규 개정 내용

지방계약법 개정 지자체 발주계약 전과정 5년간 공개 업체 정보 알선·청탁 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한 업체는 입찰·계약정보를 얻기 위한 알선·청탁 행위가 금지된다. 또 지자체 발주계약의 전 과정이 5년간 공개된다. 우리시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개정안이 2월 7일부터 시행되어 주요 개정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발주 계약에 입찰한 업체가 제출하는 청렴서약서의 금지행위 목록에 기존의 향음·뇌물·담합 외에도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추가됐다. 또 지자체는 시행하는 공사는 물론 용역, 물품 등 발주계약 전과정을 홈페이지에 5년간 공개해야 한다. 공개해야 하는 계약 관련 사항은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하도급 현황 포함), 계약내용 변경, 감리·감독·검사 현황, 대가 지급현황 등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허위통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자료를 거짓 통보한 자와 최저가공사의 하도급계획을 지키지 아니한 자가 추가됐다. 이외에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부정당업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와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로 구분해 규정했고, 과징금 부과 심의위원회를 공무원, 민



간위원 등 15명이내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
토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5140호, 2014. 2. 5】



1.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추가(제92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자료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 최저가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계약 전과정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대상·절차 규정(제124조)

- 공개대상
 -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하도급 현황 포함), 계약내용 변경, 감리·감독·검사현황, 대가지급현황
- 공개방식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공개기간 :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3. 청렴서약서 제출 절차 규정(제5조의2)

- 입찰서 제출시 또는 수의계약 체결시에 청렴서약서 제출

4.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대상·절차 등 명시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2까지)

- 부정당업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와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로 구분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규정
- 과징금 부과 심의위원회 구성
- 공무원, 민간위원 등 15명 이내 구성
- 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결과 통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안전행정부령 제57호, 2014. 2. 5】

1. 과징금 부과와 세부기준 명시(제77조의2 신설, 별표3, 별표4)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와 부정당업자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

2. 철도궤도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 제외(제70조, 별표1)

- 자갈도상 철도궤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명시



건설산업정보

PART 1.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안전행정부 예규 제73호, 제74호, 2014. 2. 5】



1.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대상 확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
 - 50억원 ~ 30억원 이상 공사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상 과징금 이상 처분시 감점 (1~2점)
2. **수익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의무규정 신설(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7절 수익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1.)**
 -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관계행정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구토록 하고 관계행정기관은 조회결과를 통보토록 함.
3. **입찰서 제출시 또는 수익계약 체결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1절 3. 및 제11장 제2절 1. 가.)**
4.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 세부절차 마련(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6장)**
 - 목적, 소위원회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시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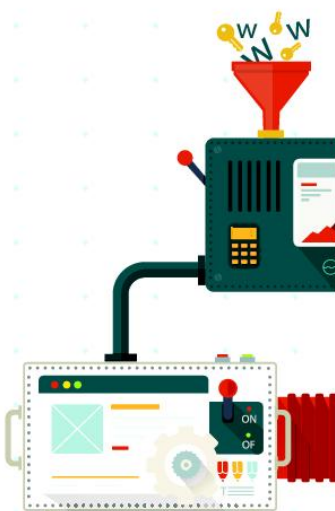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공포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유형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유형 구체화 및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를 명확히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2월 11일 개정·공포하고 14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비용발생 및 책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유형으로 보아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보증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시 대물변제 전 물품에 대한 공부(등기부 등본, 등록원부 등)의 등본을 제시토록 하는 등 대물변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5174호, 2014. 2. 11】

1. **부당특약 유형 구체화(제6조의2)**
 - 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대관업무(인·허가), 환경·품질관련 비용전가
 -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발생비용 전가
 -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재작업, 추가작업 등의 지시로 발생된 비용 전가
 - 하자담보 및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 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따른 공기연장 등



- 다. 간접비의 인정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 인정범위와 동일한 약정은 제외
- 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마. 상규규정에 준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위가 고시하는 약정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및 절차 보완(제8조)

- 가. 보증기관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 구체화
 - 기업구조조정 개시를 신청한 경우
 -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및 공사대금채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미결제, 어음부도 등
- 나. 보증기관 보증금 지급보류 사유 명확화
 -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성금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 다. 보증금 지급보류 기간 명확화
 - 보증금 지급보류기간 30일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 가능

3. 대물변제 방법 및 절차 마련(제9조의4)

- 가. 대물변제 전 제시자료 구체화
 - 대물변제 전 물품에 대한 공부(등기부 등본, 등록원부 등)의 등본 제시
 - 공부가 없는 경우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
- 나. 대물변제 시 자료제시 방법 및 절차 마련
 - 인쇄된 자료 및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
 -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으로 전자적 파일 송부
- 다. 대물변제 전 물품의 권리, 의무관계 변동시 수급사업자에게 공부 등의 자료를 즉시 재 제시
- 라. 관련자료 제공일 등 서면 작성·교부·보관 의무화
 - 대물변제 관련자료 제공일, 제공자료 주요목차, 자료 수신확인 내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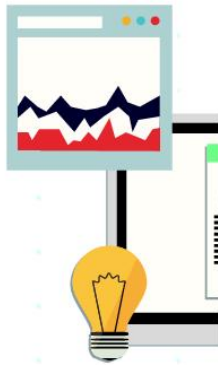
4.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별표2)

- 가. 부당특약 및 대물변제 위반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 부당특약 금지 위반(80점), 대물변제 절차 위반(60점)시 과징금 부과점수 신설



건설산업정보

PART 1.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시행 내용

모든 계약조건 심사대상... 50개 부당특약 유형 예시 "지침에 없는 사항도 위법에 해당될 수 있다"

하도급 부당특약금지제도가 2월 14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날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특약조항을 설정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령의 개정에 이어 부당특약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례를 예시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 공포하고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2월 14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부당특약금지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약조건이 부당특약 심사대상이다. 부당특약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지침에서는 이와 함께 하도급법령에서 부당특약 유형으로 제시한 약정 10개의 부당특약 해당여부 심사기준과 판단기준을 일일이 제시하고, 약정별로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까지 총 50개의 관련 부당특약 유형들을 예시했다. 하도급법령에서 제시한 부당특약 유형 외에도 ▲자재의 하차비, 장비비, 야적장 임대료 등의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서면에는 기재되지 않고 현실에만 기재된 경우를 포함해 새로운 유형들을 제시했다. 공사 수행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과 함께 ▲견적금액은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간주하는 약정 ▲원사업자 지시로 사토창 거리가 증가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약정 ▲계약된 하도급계약금액 이외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정 ▲수해·노후해 및 노조파업 등 발생시 공사기간 연장은 없다는 약정 등이 새롭게 포함한 유형들이다. 지침에서는 또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여 원도급자의 부당특약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주요내용

1.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

〈법위반 주요예시〉

- 철근,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홍관) 등 자재(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를 말한다)의 하차비, 추가 장비 사용료, 야적장 임대료(보관·관리비) 등의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서면에는 기재되지 않고 현장 설명서에만 기재된 경우
-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 시공부분 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등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법위반 주요예시〉

- 하도급 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등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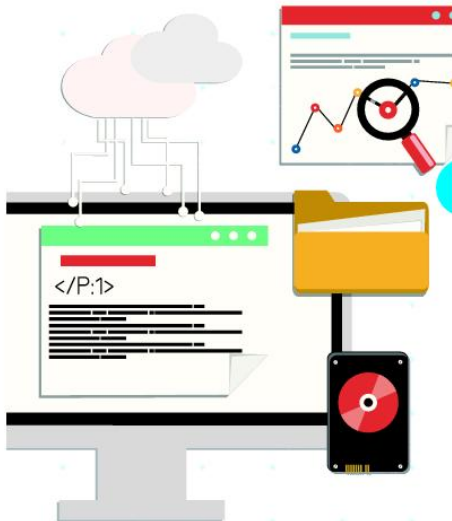
〈법위반 주요예시〉

-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된 사항이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수행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한다는 약정
-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공사 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구체적인 항목·수량·단위 등을 제시하지 않고 견적금액 또는 견적단가에는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정 등

4.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

〈법위반 주요예시〉

- 원사업자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재작업을 수행한 비용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
-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재료의 재질(색상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재작업하여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총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예, 5%)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내용

**“산재 발생보고 ‘3일 이상 휴업’으로 완화”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이 3월 13일부터 현행 ‘4일 이상 요양’에서 ‘3일 이상 휴업’으로 완화된다. 우리사회는 최근 건설업체 산재율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환산재해율 산정제도가 산업재해율을 예방하는 순기능보다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역기능적 결과를 양산하는 모순을 보여 4주 미만 경미한 산재를 통원치료와 요양치료로 구분해, 통원치료는 재해를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산재 발생보고 대상은 현행 4일 이상의 요양에서 3일 이상의 휴업으로 개선됐다.

건설산업정보 PART 1.

요양은 건설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가벼운 건설근로자의 질병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휴업은 통원·약물치료가 아니라 건설근로자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다. 따라서 건설근로자가 입원하는 중대 질병에 한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게 돼 재해율 산정 때 포함할 재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설계변경 요청 대상을 신설해 붕괴·낙하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설계변경의 요청 대상을 수급인에서 도급인으로 변경하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설계변경 요청 방법 및 제외사유를 신설해 설계변경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통보토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5251호, 2014. 3. 12】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 범위 신설(제26조의5)

-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 높이 31m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6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설계변경 요청 자문을 위한 전문가 범위
 - 안전보건공단
 - 기술사(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기계)

2.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3 개정)

-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도급인(발주자)
- 과태료 : 1차(3백만원), 2차(6백만원), 3차(1천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령 제99호, 2014. 3. 12】

1. 설계변경 요청 및 제외사유 신설(제31조의2, 3)

- 설계변경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불승인 통보(발주자 ⇒ 원수급자)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조정(제4조제1항)

-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 재해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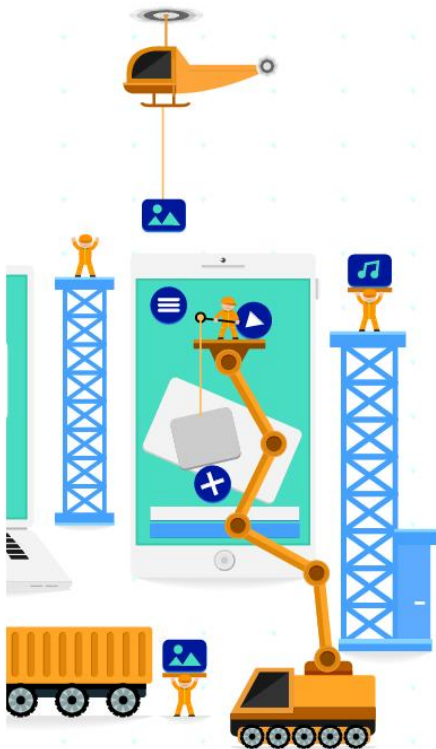


2014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내용

기초공사, 조경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등 일부 개정

우리시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포한 2014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에 적용될 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공사의 기계화 시공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해 공법별 작업능력 및 투입 품을 현실화했다. 지질 및 현장시공 여건이 다양한 기초공사의 작업 특성을 고려해 현재 공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토질 분류기준을 토사,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의 5개 기준으로 통일했다. 또한, 토질별 천공 장비인 크롤러드릴의 작업능력을 현실화하고, 보강재의 공장가공 실태 반영, 그라우팅 및 인장 작업의 기계경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품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기초공사의 H-beam 설치·철거, 토류판 설치, 기초 뒷채우기, 암반청소 등의 품과 기준을 개정했다.

H-beam 설치·철거를 현장시공 절차를 고려해 띠장과 버팀보로 분리해 제시했으며, 기초 뒷채우기의 대형장비 적용실태, 고압살수에 의한 암반청소 수행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한 품 개정을 수행함으로써 그동안 해당 공법(공종)의 품과 기준이 불분명해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에서 현장제작보다는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의 현장적용이 증대되고 있는 시공실태를 반영했다. 현행 품셈이 현장에서 원재료를 직접 가공하는 품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품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창호·유리공사, 배관보온공사에서 현재 보편화 돼있는 기성제품의 현장적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예정가격산정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모르타르 기계바름을 위한 대형장비 신설, 발포 충전제에 의한 창문틀 주위 충전, 고무발포 보온재에 의한 보온 등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에 따른 신규 항목을 제정함으로써 품질확보는 물론 예정가격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우리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표준품셈에서 “2014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운로드받아 보면 된다.



숫자로 보는 부산 10년

01 개인소득 단위 : 조원, 2012년 최종



02 시내버스 통행속도 : 단위 : Km/h, 2012년 최종



03 외국인 관광객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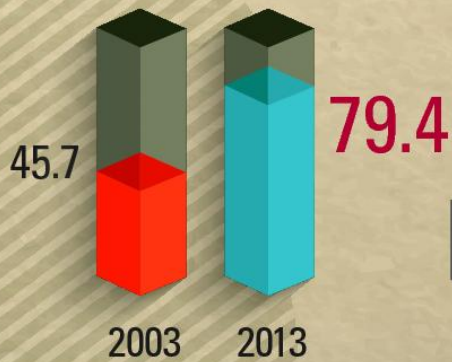
BUSAN
10YEARS

36
KOREA SPECIALTY CONTRACTOR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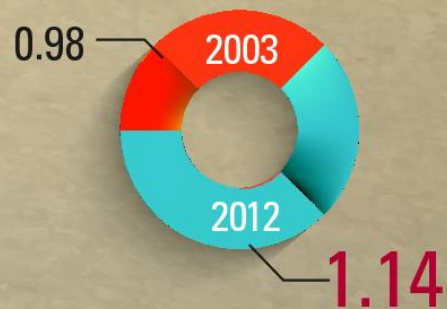
부산은 지난 10년동안 얼마나 발전했을까?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숫자와 그래프로 부산의 발전을 한눈에 알아보자.

04 도시가스 보급율 : 단위 : %



05 합계출산율 : 단위 : 명, 2012년 최종



06 항만(물동량) : 단위 : 선적 / 만 TEU



10

건설산업정보

PART 2.



건설관련 통계·요율 등 2013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결과 분석

2013년 부산전문건설업체 기성액 4조9,345억... 전년도 4조6,602억 원보다 5.9%(2,742억원) 증가

우리사회는 지난 2월 20일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를 접수·마감한 결과, SOC사업을 비롯한 공공공사가 줄어들어 기성실적 하락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예상과는 달리 부산전문건설업체계의 2013년 기성실적이 4조9,345억 원으로 전년도 4조6,602억 원보다 5.9%(2,742억 원) 실적이 증가하였다. 특히 타 지역에서 수주한 공사금액이 2,422억 원이나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부산전문건설업체가 타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것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했다. 원도급 공사가 9,754억 원으로 전년 8,523억 원보다 14.4% 증가했으며, 하도급은 3조9,590억 원으로 전년(3조8,079억 원)보다 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철도·궤도, 지방판공·건축물조립, 조경시설물, 금속구조물 등의 기성실적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공사는 2012년 11개사가 46건에 참여해 2,273억 원의 기성실적을 올렸으나 지난해에는 10개사가 51건에 참여해 1,969억 원에 그쳐 14%가량 줄었다. 전문건설협회 우리사회는 전년도 실적 대비 원도급 공사는 부산지역에서 17%, 타 지역에서 12.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공사는 부산에서 2.8% 줄어든 반면 다른 지역에서 8.7% 늘어나 오히려 지역 건설사들이 외지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벌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상위 100개 회원의 실적 합계는 전년도 실적 대비 4,572억원 증가한 3조644억 원을 차지해 실적금액의 2012년 대비 기성 실적 증가분은 상위 100개사가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건설공사실적 현황(기성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비고 (기성액증감비율)
	원도급	하도급	계	원도급	하도급	계	
실내건축	224,044,381	206,185,202	430,229,583	274,090,258	201,536,988	475,627,246	10.6%
토 공	30,319,773	966,413,162	996,732,935	25,177,852	747,241,966	772,419,818	-22.5%
미장방수	41,612,891	195,711,086	237,323,977	56,542,876	206,269,217	262,812,093	10.7%
석 공	5,167,576	48,766,672	53,934,248	7,192,105	52,963,076	60,155,181	11.5%
도 장	53,931,458	30,377,291	84,308,749	59,159,737	39,361,624	98,521,361	16.9%
비 계	26,461,440	99,026,307	125,487,747	24,779,990	100,321,946	125,101,936	-0.3%
금속창호	59,620,036	231,199,550	290,819,586	84,810,357	272,567,234	357,377,591	22.9%
지붕건조	5,999,672	68,252,270	74,251,942	7,988,751	97,795,690	105,784,441	42.5%
철근콘크리트	151,335,945	962,433,369	1,113,769,314	117,342,806	1,186,802,685	1,304,145,491	17.1%
상하수도설비	51,894,818	75,981,507	127,876,325	62,790,180	69,025,505	131,815,685	3.1%
보링그라우팅	2,738,475	276,632,040	279,370,515	8,115,536	325,451,070	333,566,606	19.4%
철도궤도	2,037,174	0	2,037,174	26,594,149	0	26,594,149	1205.4%
포 장	39,634,002	45,047,877	84,681,879	41,595,342	48,139,882	89,735,224	6.0%
수 중	19,141,628	267,254,197	286,395,825	10,130,464	321,846,955	331,977,419	15.9%
조경식재	35,036,302	46,656,023	81,692,325	37,494,195	64,541,191	102,035,386	24.9%
조경시설물	14,850,314	27,927,310	42,777,624	18,325,694	35,037,111	53,362,805	24.7%
강구조물	11,822,754	146,341,349	158,164,103	8,311,537	109,416,367	117,727,904	-25.6%
철강재설치	34,344,133	13,196,673	47,540,806	56,384,814	8,598,375	64,983,189	36.7%
준 설	31,070,799	91,146,971	122,217,770	36,989,686	59,584,078	96,573,764	-21.0%
승 강 기	11,253,620	9,425,203	20,678,823	11,597,866	12,585,159	24,183,025	16.9%
계	852,317,191	3,807,974,059	4,660,291,250	975,414,195	3,959,086,119	4,934,500,314	

가. 부산지역 건설공사 수주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전년도 비교(증·감)		
	계약액	기성액	계약액	기성액	계약액(비율%)	기성액(비율%)	
공공공사	원도급	250,403,276	213,188,324	285,258,353	241,569,883	34,855,077 13.92%	28,381,559 13.31%
	하도급	903,502,817	517,869,193	725,629,700	435,289,019	-177,873,117 -19.69%	-82,580,174 -15.95%
	계	1,153,906,093	731,057,517	1,010,888,053	676,858,902	-143,018,040 -12.39%	-54,198,615 -7.41%
민간공사	원도급	335,553,014	260,735,951	376,254,685	313,183,038	40,701,671 12.13%	52,447,087 20.12%
	하도급	1,189,278,036	831,752,007	1,382,386,152	895,856,012	193,108,116 16.24%	64,104,005 7.71%
	계	1,524,831,050	1,092,487,958	1,758,640,837	1,209,039,050	233,809,787 15.33%	116,551,092 10.67%
합 계	2,678,737,143	1,823,545,475	2,769,528,890	1,885,897,952	90,791,747 3.39%	62,352,477 3.42%	

나. 타지역 건설공사 수주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전년도 비교(증·감)		
	계약액	기성액	계약액	기성액	계약액(비율%)	기성액(비율%)	
공공공사	원도급	103,202,350	73,258,793	116,281,443	100,439,746	13,079,093 12.67%	27,180,953 37.10%
	하도급	3,002,943,405	1,436,882,315	2,417,925,794	1,297,344,705	-585,017,611 -19.48%	-139,537,610 -9.71%
	계	3,106,145,755	1,510,141,108	2,534,207,237	1,397,784,451	-571,938,518 -18.41%	-112,356,657 -7.44%
민간공사	원도급	418,855,563	299,863,010	401,208,927	318,590,193	-17,646,636 -4.21%	18,727,183 6.25%
	하도급	1,249,628,260	799,355,251	1,686,566,989	1,135,232,948	436,938,729 34.97%	335,877,697 42.02%
	계	1,668,483,823	1,099,218,261	2,087,775,916	1,453,823,141	419,292,093 25.13%	354,604,880 32.26%
합 계	4,774,629,578	2,609,359,369	4,621,983,153	2,851,607,592	-152,646,425 -3.20%	242,248,223 9.28%	

※ 해외건설공사 수주실적 제외



10

건설산업정보 PART 2.



2014년 건설업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 건강보험요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년도	보험료율
2012	보수월액 × 5.80%
2013	보수월액 × 5.89%
2014	보수월액 × 5.99%

-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2007. 1. 1)로 보험료 산정 보수기준이 종전 "표준보수월액"에서 ⇒ "보수월액"으로 변경됨.
- 2014년도 가입자부담 2.995(50)%, 사용자부담 2.995(50)%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55%(사용자 6.55%, 근로자 6.55%씩각각 부담)

▣ 연금보험요율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년도	보험료율
2012	표준소득월액의 9%
2013	표준소득월액의 9%
2014	표준소득월액의 9%

- 2014년도 가입자부담 4.5(50)%, 사용자부담 4.5(50)%씩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를 산정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사업별	보험료율	산정기준
실업급여 (공동 부담)	13/1,000(1.3%)	사용자 부담 6.5/1,000(0.65%)
		근로자 부담 6.5/1,000(0.65%)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 부담)	2.5/1,000(0.2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4.5/1,000(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6.5/1,000(0.6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8.5/1,000(0.8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실업급여요율인상, 고용안정, 직업능력은 전년과 동일

▣ 산재보험료율(천분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 2013. 12. 31】

사업종류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반건설공사(갑)	37	37	36	37	37	38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의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등에 의하여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

▣ 노무비율(백분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73호, 2013. 12. 31】

사업종류 \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반건설공사(갑)	28 (32)	28 (32)	28 (32)	28 (32)	28 (32)
일반건설공사(을)					
중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공사의 개선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고시함.

▣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73호, 2013. 12. 31】

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2010	2,844,682원
2011	3,007,852원
2012	2,597,274원
2013	2,784,717원
2014	2,953,800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최저임금 및 기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5호, 2013. 8. 2】

년도	최저임금			건설업 기준임금	
	시간급	일급	월급	시간급	월급
2011	4,320	34,560	902,880	14,392	3,007,852
2012	4,580	36,640	957,220	12,427	2,597,274
2013	4,860	38,880	1,015,740	13,324	2,784,717
2014	5,210	41,680	1,088,890	14,133	2,953,800

※ 최저임금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적용

※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2011. 7. 1부터 5인 이상 의무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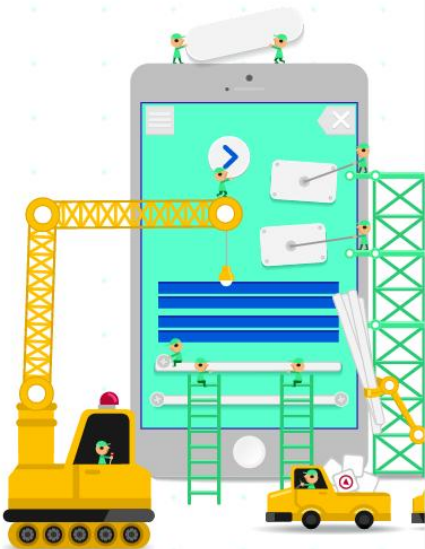
- 고용보험법 제2조의2, 동법시행령 제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고시함.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5호, 2013. 12. 26】

년도	사업주 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1인당/월)
2011	70억 4천 9백만원	560천원
2012	62억 4천 6백만원	590천원
2013	69억 0천 9백만원	626천원
2014	69억 0천 9백만원	670천원

※ 총공사실적 기준, 2014년 의무고용율 2.7%임.



10

건설산업정보 PART 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분담금사업주부담금 비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67호, 2013. 12. 26】

년도	임채부담금비율(%)	석면부담금비율(%)	비고
2011	0.8 / 1,000	0.05 / 1,000	
2012	0.8 / 1,000	0.05 / 1,000	
2013	0.8 / 1,000	0.04 / 1,000	
2014	0.8 / 1,000	0.04 / 1,000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2011년부터 보수총액기준)
- 석면피해구제분담금(2011년 신설), 2010. 12월부터 경감비율 감소(25%)

■ 2014년도 건설업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고시

올해 적용될 4대 사회보험요율 등 노동관련 각종 요율들이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99%로 작년에 비해 0.1% 올랐다. 이에 따라 가입자와 사용자는 각각 2.995%씩 부담, 보험료를 작년보다 0.05% 더 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은 작년과 같은 9%(기준소득월액)를 유지했고, 고용보험료율은 공동부담인 실업급여 요율 1.3%로 작년에 비해 0.2% 올랐으며, 사용자 부담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2.5%~8.5%는 작년과 동일하다. 산재보험료율도 0.001% 오른 0.038%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임금총액의 1000분의 0.8이다. 노무비율은 일반공사 28%, 하도급공사 32%로 작년과 같다.

건설공사의 개선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출기준인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작년 278만4,717원에서 올해는 295만3,800원으로 16만9,083원(6.07%)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4,860원에서 5,210원으로 350원(7.2%) 올랐으며,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해서는 대상사업주 범위가 '69억900만원 이상(총공사실적 기준)'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고용부담기초액은 월 1인당 67만원으로 전년 62만6,000원보다 4만4,000원(7.02%) 인상됐다.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상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1.9% 상승

우리사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회원에 안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1,961개 항목의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산출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평균 1.9% 상승했으며, 분야별로는 토목공사 2.1%, 건축공사 1.7%, 기계설비공사는 1.7%씩 각각 올랐다.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가 0.4% 하락했으나, 노임과 자재비 등 건설공사비지수가 1.6% 상승한 탓에 실적공사비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실적공사비 공고 항목에는 기존의 1,945개 항목 외에 토목공사의 흙관 절단 및 건축공사의 별채 피장설치 등 16개 항목을 신규로 지정, 총 1,961개 항목으로 확정했다. 기타 실적공사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실적공사비에서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집"을 다운로드받아 보면 된다.

201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상반기 건설업 평균임금 1.5% 상승 150,664원...일반직종 142,586원

올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일평균 임금이 전년도 하반기에 비해 1.5% 오른 15만664원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산출 근거로 활용되는 「201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해당 조사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잠수부는 6시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적용된다.

건설 주요 15개 직종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작업반장 10만5,826원 ▲보통인부 8만4,166원 ▲특별인부 10만2,334원 ▲비계공 14만9,852원 ▲형틀목공 13만2,373원 ▲철근공 12만8,252원 ▲콘크리트공 12만5,217원 ▲포장공 11만2,897원 ▲조적공 12만2,344원 ▲건축목공 12만3,567원 ▲방수공 9만1,971원 ▲미장공 12만9,924원 ▲타일공 12만6,339원 ▲배관공(수도) 12만9,456원 ▲건설기계운전자 11만2,268원으로 평균 11만8,452원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임금실태를 참조하면 되며 개별직종별 노임단가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면 된다.

2014년 상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2014년 상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전년대비 변동없어

우리사회는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2014년 상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실적공사비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이번 상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항목 및 단가는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면 된다.

2014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

2014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 회원사 안내

우리사회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활용되는 "2014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건설 기계경비 산출표는 표준품셈에 수록된 건설기계의 시간당 기계손료와 주연료 및 잡재료 그리고 운전원 등의 경비를 산출한 것이다. 산출표에서 국산기계는 공장도 가격(원)이며 도입기계는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어 2014년 1월 2일 현재 1,055원(원 미만 절사)으로 책정하여 산출되었다. 환율에 3%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주연료란에 휘발유 또는 중유로 표시되지 않은 것은 경유를 말하며, 주연료 가격은 구입 조건 또는 유가 인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게재되지 않았다. 엔진유, 기어유, 유압유 등 잡재료는 피스톤 및 링의 상태, 오일의 교환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충량을 포함한 시간당 소비량을 주연료비의 비율로 표기한 것이며, 셔블, 백호, 드래그라인, 크래셀, 비자주식 스크레이퍼 등과 같이 주연료가 없는 기계에 대한 잡재료는 표준품셈(토목부문) '11-3 운전경비 산정'을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기계경비 산정에서 "2014년 건설기계경비 산출표"를 참고하면 된다.



건설산업정보

PART 2.



건설업 노동관련 주요 제도 안내

I. 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화

1. 시행시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2012년 1월 1일 시행
2. 적용내용 :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업체만 보관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2부를 만들어 업체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함.
3. 벌칙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II. 2014년도 최저임금

1. 최저임금액 : 시간급 4,860원(2013) → 시간급 5,210원(2014)
2. 임금액(1일) : 41,680원, 최저임금(월) : 1,088,890원
3. 최저임금적용 시기 : 2014. 1. 1 ~ 2014. 12. 31

III.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 적용 강화

1. 적용시기 : 2014. 7. 1부터 시행예정
2. 적용내용
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에 대한 지연신고시 : 과태료 1인당 5만 ~ 10만원 부과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정 등의 경우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업무 위반시 : 주의·경고없이 최고 1,000만원 까지 과태료 부과

IV. 퇴직급여제도의 확대 적용

1. 적용대상 : 전사업장
2. 시행시기 : 2013. 1. 1부터(단, 2010. 12. 1 ~ 2012. 12. 31 기간은 퇴직금액의 50%를, 2013. 1. 1 이후 100% 적용)
3. 중간정산금지 : 2012. 7. 26 이후부터 시행(단, 무주택자 주택구입,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천재지변, 개인파산 등의 경우 일부예외 허용)

V.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의 변경

1. 적용시기 : 2010. 9. 30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 부터
2. 공공공사 및 민간투자공사 : 예정공사금액 5억 → 예정공사금액 3억(변경)
3.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공사 : 200호 이상으로 현행과 같음
4. 민간공사 : 예정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신설)

VI. 건설업 사후정산(국민연금, 건강보험)

1. 적용시기 : 2006. 12. 29일 관급 공사분 이후 현재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2. 적용대상 : 건설공사 현장별 1개월 이상 & 20일이상 일용근로자
3. 기 타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추정

VII.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1. 적용시기 : 2005. 1. 1 이후 건설면허 보유 사업장에 대해 본사 및 현장 일괄 적용 신고 및 납부
2. 법정기한 : 매년 3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
3. 기 타 :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정산실사를 통해 추정



VIII. 건설업 장애인 관련

1. 적용대상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기준 건설업 공사금액 고시
2. 부담기초액 : 670,000원(1인당/月)



건강보험 신고업무

"건강보험 신고업무 철저히" 건설현장'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꼭 해야

우리시회는 건강보험 신고업무와 관련 건설공사 수주시 본사와 분리하여 개별현장 단위로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할 것과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도 현장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사에 안내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관련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건설업체가 납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기성금 지급 시 사업주 부담부분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받는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기획재정부 정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7장 및 안전행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에 대해 각별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건설현장별로 개별 가입신고한 경우에 한해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외하는 사후정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일괄신고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2개 이상 건설현장에서 각각 1개월 동안 20일 미만 근무했다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보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을 적용해 보험료를 납부도록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공지사항「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10

건설산업정보

PART 2.



건설공사대장 KISCON 통보 제도

건설공사대장 KISCON 통보 “전문건설업체 과태료 등 불이익 방지에 관심 필요”

우리사회는 회원사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서는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체결 시 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2011년, 2012년 계약공사 관련,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한 건설업체를 조사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따라서,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인 1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4천만원 이상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접속해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이미 통보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하며 ▲공사개요및계약내용 ▲보증금, 현장기술인,공사대금 수령 사항 ▲하도급계획 내용(재하도급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현황,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체현황 등이 통보대상이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 시정명령을 받게 되는데 공사 준공일까지 미통보 시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정명령 불이행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공사 준공일까지 미통보 또는 허위통보시 3차에 걸쳐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분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시행시기	2003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통보하는주체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통보받는주체	발주자	발주자
통보대상공사	-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 4천만원(VAT포함)이상의 하도급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통보 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예한함
통보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 전자적통보	
통보내용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과태료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400만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관련 유의사항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 필수항목 명시된 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장사항

우리사회는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을 비롯한 필수 항목이 명시된 계약서를 서명날인한 후 상호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필수항목 누락,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장사항이므로 필수항목이 명시된 별도의 계약서도 사용이 가능함을 덧붙였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아래와 같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100만원

2014년 부산지역 공공공사 발주계획 정보

부산지역 공공공사 발주계획 정보 회원사 안내

우리사회는 1월 10일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고자 부산광역시 및 직속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본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등 부산지역 81개 발주기관의 2014년도 공공공사 발주계획을 수집·통계하여 우리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자세한 발주기관별 2014년 발주계획은 우리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회원전용공간 → 건설공사정보 → 발주계획에서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2014년도 공공공사 발주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번	발주기관	발주건수	공사예정금액	비 고
1	부산광역시	53 건	5,553	
2	부산광역시 산하 사업소	231 건	154,478	
3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8 건	413	
4	부산광역시 구·군청	394 건	33,848	
5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등)	117 건	80,192	
6	부산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177 건	86,875	
계		1,000 건	361,359	



건설산업정보

PART 2.

'14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2014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공고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전문인력 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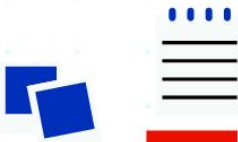
해외건설협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현장 경험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해외건설 인력 육성을 위해 '2014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 그 대상이다. 1인당 180만원 한도 내의 파견비용과 1인당 월 80만원의 훈련비용이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6개월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상시접수로 선착순 마감된다.

※ 문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인력개발처(☎02-3406-1033)

2014년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

"중소기업 정책자금 많이 이용하세요" 우리사회, 건설업종 지원대상 확대 회원사 안내 조경·방음·내화·폐기물처리·소방시설 등 추가

우리사회는 올해부터 건설업에 대한 융자대상이 확대된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을 회원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안내했다. 올해부터 건설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대상이 대폭 확대돼 지난해 7월 포함된 산업플랜트 건설업 외에도 조경건설업과 방음 및 내화공사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소방시설 공사업이 추가됐다. 건설분야 사업별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지원자금(9,150억원)과 사업전환자금(1,700억원)은 건설업 전체가 해당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3,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8,35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500억원), 창업기업지원자금(1조3,000억원) 등은 앞서 밝힌 공사업종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지원 분야 업종의 매출액이 가장 커야 한다.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수도권은 45억원, 그 외 지역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된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7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도 적용할 수 있다. 각 분기별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된다. 융자 신청과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부산지역본부(051-630-7400) 또는 부산동부지부(051-712-9670)로 신청하면 되고 기술성과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융자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 매출채권보험 건설업종 판매 개시

우리사회, “건설업도 매출채권보험 가입 허용”건의 결실 2013. 11월부터 매출채권보험 건설업종 판매 개시

정부는 2013. 11. 11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을 활용한 '매출채권보험' 제도에 건설업이 가입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B2B전자어음으로 지급 후 만기 미결제하는 등의 경우는 전문건설업체들도 정부금융정책의 혜택을 받게 됐다. 우리협회는 그동안 외담대를 활용한 '매출채권보험' 제도가 제조업 중심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매출채권보험 건설업 가입 허용'을 적극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11월 11일부터 건설업종도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된 것이다. 물품의 판매자(보험계약자)가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보험 대상이며, 최근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이 1년 이상(단, 포괄근로보험은 2년 이상)인 하도급자가 보험계약을 할 수 있다. 구매자는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 정부 및 지자체, 정부출자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이행지체중인 기업 등을 제외한 원도급자이다.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보험요율은 0.1~5%(구매자 신용도, 결제 기간에 따라 차등)이며, 최고 30억원(근보험), 최고 10억원(개별보험)까지 보상한다. 보험금은 구매기업(원도급사)이 당좌부도, 폐업, 해산 등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하거나 만기미결제 후 5일 경과되어 이행지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코자 하는 기업은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청약하면 된다.

국세청이 세금 포인트제도 적용확대 계획

중소법인도 '세금포인트' 혜택 받는다 3월부터... 적립되면 납기연장 신청시 담보제공 면제

국세청의 세금 포인트제도 적용대상이 3월부터 개인 외에 중소기업 법인에까지 확대됐다.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개인에게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 제도를 3월1일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상 확대는 우리협회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운영한 중소기업세정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건의한 결과로 코스카 공정거래정책위원회 이규석 위원장이 세정지원협의회 위원으로 활발한 건의활동을 펼쳤다. 세금포인트 적용은 2012년 1월1일 이후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10만원당 세금포인트 1점을 부여하고, 세금포인트가 1,000점 넘을 때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납세담보 면제금액은 적립된 세금포인트 환산금액(포인트×10만)의 50%를 연간 5억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납세담보 면제는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에 받는다. 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법인사업자→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조회)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체 법인 사업자 중 약 6%만 의무적으로 발행하던 전자어음을 앞으로는 약 36%의 법인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며, 전자어음 의무 발행 법인이 종이어음을 발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와함께 전자어음 분할배서제도도 도입, 발행인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에 한해 총 5회 미만으로 분할 배서할 수 있게 됐다. 분할된 전자어음은 독립된 전자어음으로 취급되며 분할 후 어음이 서로 구별될 수 있도록 각각 분할번호가 부여된다. 분할배서제도의 도입으로 하도급대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은 하도급자는 이를 나눠 재하도급업체에 분할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줄 수 있다.

▣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의 비교

구분	종이어음	전자어음
존재형태	서면	전자문서
종류	약속어음 및 환어음	약속어음
적용법률	어음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어음법
발행방법	제한 없음	·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 · 신용상태에 따라 등록거부 및 연간 총 발행 금액 제한 가능
발행·배서방법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자문서에 공인인증 서명
배서제한	제한 없음	총 배서회수 20회
분할배서	불가	가능(2014. 4. 6. 시행)
만기제한	제한 없음	발행일로부터 1년
백지어음	가능	금지
관리기관	없음 *교환결제를 위한 어음교환소 운영	전자어음관리기관



11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유권해석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수수료 반영 관련

【질의요지】

계약체결 후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제66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설계변동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체결 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산출내역서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1009(2013. 8. 1)



변경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적정성 심사여부

【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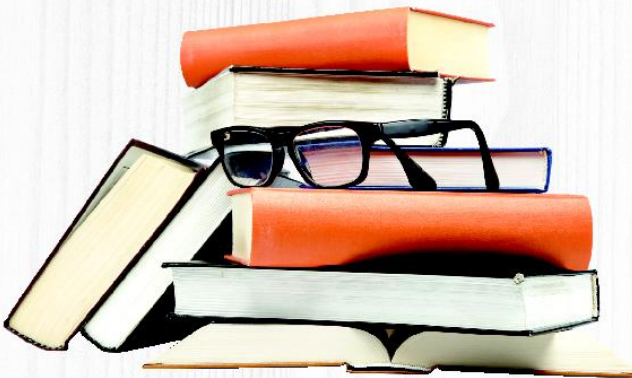
하도급 최초 계약시 하도급율은 82%를 상회하였으나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하도급 변경계약을 시행한 결과 하도급율이 82% 미만으로 낮아졌을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거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도의 취지는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적정 품질을 확보하고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최초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율이 82% 이상으로 하도급계약의 적정여부를 심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변경계약시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여부를 심사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 (2012. 1. 11)



건설판례

수급인이 하자보수 미이행시 공사잔대금 채권에 유치권 행사 여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4상,398]

【판시사항】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직접 지급 의무를 면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하도급대금직불] [공2014상, 488]

【판시사항】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위 금원을 선급금 총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에서 제외하는 약정을 한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총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에게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총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선급금의 총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하고,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총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때에는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총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산약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을 수급인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약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총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하도급대금직불] > 종합법률정보 판례)



12

회원사
질의·응답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FAQ”

1.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의 적용 시기는?

- 2013. 6. 19일 이후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계약이 체결된 건부터 적용

2.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여부?

- 건설공사의 도급(하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반영

3. 2013. 6. 19일 이전 발주공사도 보증서 발급수료를 반영해야 하는지?

- 제도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된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을 통해 보증서 발급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 제64조(물가변동) 및 제65조(설계변경)의 규정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4. 2013. 6. 19일 이전 발주공사에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반영 시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은 건설기계대여계약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긴급하게 대여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의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계약금액 조정 전에 우선 대여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음.



회원사 질의·응답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FAQ” ”

5. 모든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보증하여야 하는지?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1건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인이 포괄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음.

6. 원도급자가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할 경우에 지급보증 면제대상인지?

- 원도급자 직불은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아님.

7. 포괄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도 면제되는지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보나, 포괄대금지급보증면제 대상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이 면제대상이라하더라도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8.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대상 건설기계는?

-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하며, 유사한 장비라하더라도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는 장비는 보증대상이 아님(예 : 화물차)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조

9. 지급보증이 가능한 건설기계대여업자 확인 방법?

- 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등록증은 그 대표자에게 교부(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개별은 모두 대여업등록증 보유)
- 대표자가 아닌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나머지 구성원(연명등록자)은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연명등록자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명등록자 소유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상 '대여업체 및 사용본거지'가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상의 '상호 및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상의 최종소유자는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연명 등록자로 볼 수 있음.

12

회원사
질의·응답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FAQ”

10. 하도급내역서상의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원도급내역서상의 발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반영기준은?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에 따라 산정된 원도급자 대여계약, 종합건설업자인 하도급사 대여계약, 전문건설업자인 하도급사 대여계약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이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도급, 하도급 공사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에서는 산출금액에서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을 반영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에서 하도급공사비의 범위?

- 하도급공사비는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반영전의 공사비, 노무비, 경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경비에 발급금액을 추가하여 부가세를 산출하면 됨.

12.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으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

-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법 제81조 제4호)를 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법 제82조 제1항 제8호)할 수 있음.



건설정책 연구보고서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국내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분석 및 시사점

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 기업 활동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 중요함.
- 2013년 건설기업의 자금 흐름 및 금융기관 이용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건설기업들은 2013년과 2014년 스스로의 자금 사정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체의 자금 사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3년 1/4분기 건설업 전체의 자금사정에 대해 '매우 어려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17.4%,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중은 47.9%로 65% 이상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좋았다'는 응답을 한 기업의 비중은 2.5%('매우좋았음' 0.6%, '좋았음' 1.9%)에 불과했음.
 - 2014년 건설업 전체의 자금 사정 전망에 대해서 조사 대상 건설기업들은 악화(63.2%), 변화 없음(18.6%), 크게 악화(10.6%), 호전(7.4%), 크게 호전(0.2%) 등의 순으로 응답했음.

2.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개황

- 2001년, 2008년, 2011년, 그리고 2013년 건설업 금융실태조사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건설기업들의 자금조달 추이를 분석함.
 - 조사 대상 분석이 가능한 2008년, 2011년, 2012년에 설문에 응한 기업규모별 분포가 일정하지 않아 설문결과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음.
 - 2011년 조사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사정이 강조되는 표본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소기업 비중이 높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비해 2012년에는 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과도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중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이 상향 조정됐음.
- 건설기업들은 외부 금융보다는 내부 금융에 의존하는 바가 큼.
- 외부자금을 조달할 경우, 건설기업들은 직접 금융보다는 간접금융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설문결과에서 나타났음.
- 간접금융의 경우, 은행과 건설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음.
- 건설기업들의 금융기관 차입에서 담보대출의 비중은 줄고 신용대출의 비중은 증가해 왔음.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험과 관련하여 중기업과 소기업은 제한적인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 건설기업들은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건설공사의 물량 확대를 선호해 왔음.

3. 건설업의 자금조달 구조 분석 및 진단

- 2011년 건설업은 전체 산업이 조달한 자원 중 8.1%를 사용하여 전체 산업매출액의 8.4%를 생산했는데, 건설업의 조달액과 매출액의 비중은 2007년에 비해 하락했음.
 - 2007 ~ 2011년 기간중 건설업의 자금구조는 자본의 비중은 줄고(43.2% ⇒ 39.3%), 부채의 비중은 증가(56.8% ⇒ 59.9%)했음.

건설정책 연구보고서

- 단기 차입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건설업은 타인 자본을 차입하는데 있어 경기 변동 리스크와 이를 반영하는 통화 정책 변동의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단기 금리 변동 리스크에 노출돼 있음.

- 건설산업의 이러한 단기 자금 중심의 자금 조달구조는 수요가 불안정한 수주 산업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계 및 장비 등 고정시설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 불리함.
 - 건설업의 직접 금융을 이용한 자금조달을 살펴보면,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하락한 건설업의 시가 총액은 금융위기 이후 조금 회복하였으나, 2007년에 비하면 2012년의 시가 총액은 49% 수준임.
 - 건설업이 자본 계정으로 자금을 조달한 규모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20% 하락했는데, 특히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체, 규모별로는 중소 건설업체에서 하락 정도가 심했음.
 - 건설공제제한은 경기 상황에 크게 상관없이 건설업에 대해 일정한 자금 공급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 업계의 어려움에 반응하여 2012년에는 대출금 공급을 증가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4. 건설업의 간접금융 활용 여건 및 부동산 PF 분석

- 예금은행이 2000년 1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 공급한 대출금의 전년 동기대비 분기 성장률의 평균은 12.9%인데 제조업에 대한 대출금의 성장률 평균은 9.7%, 서비스업에 대한 대출의 성장률 평균은 16.3%인 반면 건설업에 대한 예금 은행 대출금 성장률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은 8.3%임.
 - 건설업에 대한 예금 은행 대출금의 성장률이 낮은 원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건설업에 대한 예금 은행의 자금 공급이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을 많이 받기 때문임.
 - 실제로 건설경기가 활성화됐던 2005년 3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 건설업에 대한 예금 은행의 대출은 평균 26.6%의 비율로 증가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는 평균 성장률이 -7.5%였음.
- PF 대출에 따른 대형, 그리고 중견 건설기업의 부담은 쉽게 줄지 않고 있음.
 - 2011년말 상위 100대 건설사의 PF 대출 잔액은 45.3조원인데, 이들 건설사(10대 건설사의 매출액 제외)의 2011년 매출액은 112조원임.
- 채무 보증에 따른 우발 채무와 시행사의 파산에 따른 채무 인수 외에도, 부동산 PF로 인한 재무적 부담은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방식으로 건설사의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내부 금융 여력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자금, 특히 차입금에 대한 수요를 늘려 결국 건설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함.

5. 결론 및 시사점

- 내부 유보 자금과 유동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의 자금조달 구조는 경기 변동에 취약함.
 - 자금조달 구조의 경기 민감성은 건설업의 PF 사업 부문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증가했음.
 - 경기 변동에 따라 겪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의 수익성 제

고 노력보다 산업 밖에 있는 발주자에게 물량 확대를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건설산업의 자금조달 현실임.

- 건설 물량 확대에 이어 많은 수의 기업들이 건설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통해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공사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방안은 건설기업들, 특히 중소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의 현금 흐름을 개선시켜, 이들 건설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공공 건설시장의 축소와 저가 공사 수주 등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향후 1 ~ 2년은 지속될 수도 있어 건설기업들은 내부 유보 자금이라는 중요한 자금 조달원에 제한을 받게 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임.
- 실제로 신규 계약 축소, 저가 공사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해 2013년과 2014년에도 건설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2012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였음.
 - 내부 유보 자금 활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에서, 건설기업들은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보다 더 높이지 않을 수 없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에 대한 예금은행의 대출금 비중은 10%에서 5% 수준까지 하락했음.
-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이 강조되는시기에, 장기적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이 필요함.
-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PF처럼, 기획 개발 역량을 건설산업 경쟁력의 주요 원천으로 간주하던 미래 전략이 유행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하여 부동산 PF는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금융시장의 경기 변동에 따라 건설업의 지속 가능성을 오히려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부동산 PF 부실화의 경험과 이에 따른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 등을 감안하여, 지속 가능성에 보다 중점을 둔 새로운 미래 전략의 발굴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새로운 미래 전략은 건설업 자금조달 구조의 경기 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보다 심화하지 않고 오히려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의 발굴을 내포하여야 할 것임.





건설일용근로자와 퇴직금



노무법인 부산삼신 대표 공인노무사 **여찬모**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라 함은 하루(일)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어 일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아침에 출근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그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일이 종료되는 저녁이 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다음날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새로이 근로관계가 발생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직업소개소에서 일을 소개받아 하루하루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잡부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해지되고, 그 근로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되어 근속과 관련된 퇴직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반 일용직들을 보면, 1일 단위로 임금이 산정되지만 (예 : 일당 10만원) 보통 계약기간이 공종 종료시나, 1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임금을 1일단위로 산정된 임금을 월단위로 정산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상기한 일용근로자로 보기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보통 날씨, 공정에 따라서 또는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는 달리 상기의 일용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통칭 일용직 근로자로 표현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형태를 띠는 건설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및 기타 법률이 전부 적용되는 근로자로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일반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모두 적용되는데도, 아직도 현실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이러한 것이 적용되지 않아왔던 과거의 관행에 따라 이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 최근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여러 가지 법적이슈 중 퇴직금지급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결론적으로 건설일용직근로자가 일반 상용직근로자와 달리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한다.

대법원 1998.03.24. 96다 24699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1년에 13일 정도만 결근하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당연히 지급대상자라고 할 것이다.

위의 판례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판시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 예외사항과 노동부의 계속근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아래에 이를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자.

1.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즉, 4주 평균(보통 1달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지급의 예외자로서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며, 특정월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이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 1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더라도, 중간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의 판단

1) 회사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다른 회사에 가서 1일이라도 일한 경우(필히,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 신고가 되어야 함)에는 현재 회사를 퇴직한 것으로 보고, 다른 회사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이름만 다른 회사로 명의를 이동시킨 후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을 중시하는 노동관계법의 특성으로 계속근로 관계를 인정받을 여지가 크다.

2) 고용보험 신고단위인 1개월동안 1일도 신고되지 않은 경우 퇴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 부분은 노동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가 업무를 쉬는 이유가 무엇인지, 쉬고 난 이후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있는지, 근로자에게 퇴직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판단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해석상 다툼을 벌이지 않게 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 및 실무적 차원에서 장기간 쉬고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신규입사자와 같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노동부는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바, 현실적으로는 일용근로자가 한 회사에 소속되어 간헐적으로 일해왔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1년 이상 되고 있는이상 특별한 증거가 없는한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일을 하는 일용직근로자들이 1년이상 근무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지하여 인력운용 및 비용계상을 하여야 할 것이나,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일용직들에 대해서는 근로관계가 현실적으로 단절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재입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일용직고용보험심고를 명확히 하여 타사업장에 근무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업 실질자본의 이해



부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정정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요건 즉 업종별로 요구되는 건설업실질자본금액이 얼마다 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설업실질자본금액이 무엇인지, 또 그 건설업실질자본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마도 자본금요건 미비로 매년 영업정지 등 다수의 건설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봐도 짐작이 간다. 건설업실질자본금액의 구조 및 산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건설업실질자본이란?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건설업용자본(건설업용자산에서 건설업용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데, 건설업용자산이란 회사의 총자산에서 부실자산과 비건설업용겸업자산을 뺀 것을 말하고, 건설업용부채란 총부채에 부외부채를 더하고 비건설업용겸업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이 건설업용자본의 산정에 있어서 제기되는 부실자산이란 자산적 가치가 없는,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용으로는 소용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몇가지를 열거하면,

- 1) 무기명식금융상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치급금 또는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부도어음, 1년이상 경과된 장기성매출채권 등
- 2)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예금거래실적증명상 허위이거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및 사용이 제한된 예금
- 3) 재고자산중 재고수불부에 의한 재고실재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장일지, 구입증빙 등으로 실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총부채에 포함되는 부외부채에는 정부상 계상되지 않은 차입금, 부실자산과 상계된 부채, 미지급금료, 미지급퇴직금(퇴직급여추계액), 미지급법인세 및 주민세 등이 해당된다.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건설업관리규정상 정해져 있는 겸업자산이 있고, 타업종을 동시에 영위함에 따른 겸업자산 및 부채가 있을 수 있다.

건설업관리규정상 정해져있는 겸업자산으로는 비상장주식, 운휴중인 자산, 사용이 제한된 예금, 건설업과 관련없거나 부동산매매업용 재고자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 등이다.

타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한 겸업자산과 이 겸업자산과 직접관련된 부채는 겸업부채로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동시에 차감한 후,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건설업용과 타업종겸업용으로 나누어야 한다. 건설업용자산과 겸업자산의 구분방법은 상시구분경리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각 업종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자본금비율 등 적절한 겸업비율을 산정하여 구분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업실질자본의 산출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매년말 회계결산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사전에미리 점검하여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겠다.



행복 사회를 선도하는 기업 (주)에이비엠그린텍



에이비엠그린텍의 기업 모토는 "기여와 봉사로 사회적 행복을 만드는 기업"이다. 에이비엠그린텍은 고객, 직원 및 주주, 그리고 주변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배려, 나눔, 행복 중심의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김병철 대표이사는 지난 20여 년 간 (주)에이비엠그린텍을 성장시켜 오면서 "기술 중심의 강소기업 구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지속 발전을 견인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에이비엠그린텍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쉽 없는 기술개발로 강소기업의 꿈을 키워가는 기업

1992년 대한개발로 출발한 에이비엠그린텍은 1996년 미국에서 아치패널 시공 공법을 도입해 국내에 정착시킴으로써 건설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한국 실정에 맞는 최적의 공법을 연구하여 내·외장 마감을 동시에 실시하는 고도로 모듈화된 공법을 개발하여, 공사기간을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등 안전하고 경제적인 기술로 인정받아 특허 및 건설신기술을 획득하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독일의 패널 성형 기술을 도입하여 자유로운 곡면 시공이 가능한 아트그린 패널 시스템을 시장에 선보이며 대형 물류 창고 및 전시시설 등 건축 조형미가 강조되는 곳에 널리 적용하며 지붕 패널 시공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여 왔다. 최근에는 누수걱정이 전혀 없고 강풍과 폭설에 대응력을 더욱 향상시킨 차세대 금속지붕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특허 및 성능인증을 확보하고 시장에 선보이고 있어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한편, 21세기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신사업 개발을 위해 200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2009년 국가보급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태양열 집열시스템, 지중열 교환시스템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 전문기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혀오고 있다. 특히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태양광 조명시스템

개발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5여 년 만에 10여 건의 정부 R&D과제를 성공시키며, 2건의 새로운 건설신기술을 태양광 조명분야에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선진국과 10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세계적 수준의 패시브, 액티브 타입의 태양광 조명기술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주거용, 사무실용, 산업용 제품군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태양광 조명기술 제품의 개발과 확산에 앞장서며 건설시장에 새로운 가치조명 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 인력확충 및 Task Force 팀 운영을 통해 이원화된 연구 개발체계를 가동하며 초고효율 친환경 단열소재와 IT기술이 접목된 신개념 지붕패널제품 개발과 지붕 시공기술과 발전 전력 제어 기술이 접목된 지붕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효율 향상 기술 개발에 열중하며 건설기술, IT기술,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밀양공장



홍보관



나눔과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

에이비엠그린텍은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통해 고객은 물론 임직원, 주주 및 사회공동체의 행복가치 실현에 집중한다. 이러한 기업 정신은 김병철 대표이사의 '4321 경영'을 통해 잘 투영되고 있다. 회사 수익의 40%는 회사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고, 30%는 주주에게 배당하며, 20%는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며, 나머지 10%는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방침을 실천해 옹고 있다.

고객을 위한 행복 가치는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맞춤형 설계시공 시스템 운영을 통해 현실화 되고 있지만, 친환경 녹색 기술을 이용해 우리 사회적 행복에 기여하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의지로도 잘 반영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시공 사업 및 태양광조명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던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에이비엠그린텍은 직원 복지도에 각별한 면이 있다.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직원 1인당 직무교육 년 간 2회 수료를 권장하고, 담당자 중심의 자율문화 육성을 위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합당한 평가와 보상으로 연결되도록 핵심성과관리제도, 특별성과급제도, 자사주 지급 제도 등을 시행하며 기업과 직원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행복한 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임직원 일부는 해외 의료봉사 및 오지 학교시설확충 등 국제봉사활동을 떠나기도 하고, 회사 창립 기념일에 즈음해서는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주변 공동체와 공존하는 기업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있다.



방글라데시 장학금 전달



창립기념 봉사활동



캄보디아 국제봉사활동

회원사 현황

부산전출입업체 현황

전출 전문건설업체 현황

(1월 1일 ~ 4월 30일)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전출일자	전출소재지
대주건설(주)	두병록	부산 사하구 괴정동 795-10(202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014.1.17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장로 74로
(주)더블유제이아이엔티	강석문	부산 연제구 괴정로 326 3층(연산동)	실내건축공사업	2014.3.25	서울 중랑구 상봉로 62(망우동)
(주)덕상	정경태	부산 동래구 안락로 88(안락동)	석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014.3.17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226
디에스특수건설(주)	최희영	부산 수영구 수영로 618, 2층(광안동)	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014.4.25	경남 양산시 옥곡1길 15(남부동)
(주)디앤아이제도	임동현	부산 남구 문현동 529-21(3층)	실내건축공사업	2014.2.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북 2길 2, 2층(산호동)
(주)세양토건	강성훈	부산 금정구 두실로 52 3층(남산동)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14.3.19	전남 광양시 무등길 4(중동)
(주)아인디자인	반종규	부산 남구 대연동 1089-9(3층)	실내건축공사업	2014.2.1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18번길 45, 311호(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
(주)오승건설	오수현	부산 연제구 연산동 1492-19 삼성빌딩 2층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014.1.1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1, 103호(도계동, 강남프리텔)
(주)우빈건설	이창용	부산 동구 중앙대로 258 4층(초량동)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14.2.24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339, 101호(경보해변빌라)
정문이엔씨(주)	송하훈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63-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14.2.11	서울 동작구 대방동 27길 91, 3층(대방동)
(주)탄성	김필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247-17(2층)	도장공사업	2014.3.17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1538번길 75
(주)현지건설	장선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522호(재송동, 큐비이센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014.3.1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분수대길 34(2층)



전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1월 1일 ~ 4월 30일)

상 호	대표자	소재지(현주소)	업종	전입일자	전입소재지
(주)거성토건 이엔씨	강신철	부산 동래구 여고로 25 (사직동) T.504-3050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14.2.4	서울 강남구 논현로8길 13 302호(개포동 하남빌딩)
건국건설(주)	권혁소	부산 남구 수영로 18-8 102호(문현동, 삼한사랑재상가) T.636-6864	실내건축공사업	2014.3.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8동 305호 (원곡동, 원곡유통상가)
(주)경원개발	양경화	부산 강서구 대저로 평강로 278, 2층 (대저1동) T.832-6007	토공사업	2014.3.3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37 630호(상남동, 덕산 베스트셀)
(주)대보건설	김수일	부산 동래구 총렬대로 125번길 9(온천동) T.782-3754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014.3.27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55-10
(주)덕상	정경태	부산 동래구 안락로 88 (안락동) T.055-336-4079	석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014.2.5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226
(주)도원타워	김한생	부산 동래구 수안로 20 (수안동) T.714-4213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014.1.17	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613-5
(주)디자인 공간이힘	박귀봉	부산 남구 진남로 194-1 (문현동) T.751-5554	실내건축공사업	2014.3.18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관리 383-1
부창건설(주)	안언주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 31, 2층(지사동, 자동차 부품공장-아파트형공장) T.973-1983~4	토공사업	2014.2.2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명주6길 7 (인후동2가)
(주)세웅건설	장성배	부산 동래구 총렬대로 238번길 31 4층(수안동 태웅빌딩) T.337-854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014.1.28	경남 김해시 삼방동 182-4 워더스 오피스텔 504호
성진종합건설(주)	김용성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121-1, 5층 (최동) T.055-335-2259	실내건축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2014.4.10	경남 김해시 삼안로 162-1, 2층(삼방동)
(주)소해하우징	최순재	부산 수영구 남천서로 13 번길 13, 202호 (남천동 인산하이츠빌) T.625-8880	실내건축공사업	2014.1.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1 삼성리고빌 204호
(주)스타스코 디앤씨	전광섭	부산 남구 용당동 485 동명대학교교실관 405호 T.911-3600	조경식재공사업	2014.1.1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18-1 916호(청학스파빌)
(주)신세양토건	김윤식	부산 금정구 두실로 52 3층 (남산동) T.582-424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14.3.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6번길 31
우솔조경건설(주)	박소연	부산 금정구 범어천로 46 302호(남산동) T.512-1220	조경식재공사업	2014.2.3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84(반포면)
창현개발(주)	김기숙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화로 17, 제상가동 제1층 제101호 (부전비치) T.723-3378	토공사업	2014.4.14	광주 동구 필문대로 137 번길 5-32(산수동)
(주)지백건업	심규봉	부산 남구 수영로325번길 12, 501동 106호(대연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T.611-0717	포장공사업	2014.2.1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835
(주)해림건설산업	강안희	부산 기장군 정관면 구연리로 11-4 T.731-61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14.2.10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91-14
호인건설(주)	양경호	부산 중구 대청로 121-1 102동 1115호(대청동1가, 코모도 에스테이트) T.466-048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014.1.14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226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14. 4. 30 기준)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21	51	남구	90	124	북구	65	89
동구	61	136	금정구	189	288	사상구	100	122
서구	24	27	연제구	134	199	강서구	103	155
사하구	59	79	해운대구	176	266	기장군	133	203
영도구	20	32	수영구	98	146	합계	1,606	2,369
동래구	167	216	부산진구	166	236			



17

협회 집행부 소개

01 회장단·회원감사 [연장순]

회장



(주)에이비엠클린텍
김병철

부회장



(주)공간조경
정석봉

회원감사



(주)세원이엔지
김세원



(주)성덕건설
김경식



영빈건설(주)
김재진



신우개발
김문곤

02 운영위원 [연장순]



동림건설(주)
최문학



(주)원산토건
전병우



천지개발(주)
임철규



(주)금원건설
정영군



옥산건설(주)
유재봉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최상대



(주)에이탑이엔지
정진철



동신창호유리상사
이기호



(주)성신창업
김홍수



다산건설(주)
김형목



새벽건설(주)
김정수



무성토건
김종한



(주)형산산업
강성구



지산특수토건(주)
김형겸



경남종합조경
송유경



광민건설(주)
최형선



화신산업개발(주)
어경선



삼지건설(주)
이태원



(주)아이투디자인
김종철

03

자문위원
【연장순】



(주)소원건설
최기항



(주)주일건설
박강일



동아정밀공업사
윤병화



(주)이화종합건설
곽영길



(주)라인그룹
김원봉



(주)제일공사
박수근



한일금속공업사
주병규



청도건설(주)
장현희



(주)동궁건설
하태철



(주)거도산업
김창욱



(주)수퍼크랙실
홍주환



석봉건설(주)
한상호



(주)고산
이정근

04

중앙회대의원
【연장순】



(주)에이비엠그린텍
김병철



천지개발(주)
임철규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최상대



(주)공간조경
정석봉



(주)세원이엔지
김세원



(주)성신창업
김홍수



(주)성덕건설
김경식

17

협회 집행부 소개

05

중앙회제위원
[연정순]



신문사운영위원
(주)라이프하우징
이형민



기획제도위원
(주)삼강기업
김점식



윤리위원
동신창호유리상사
이기호



기술위원
지산특수토건(주)
김형겸



공정거래정책위원
(주)삼영건설
조경순

06

업종별
분과위원장
[업종순]



실내건축
(주)세화하우징
윤태울



토공
천지개발(주)
임철규



미장·방수·조적
건진개발(주)
심수울



석공
(주)솔석재
김기광



도장
(주)우림시티
장용길



비계·구조물해체
화신산업개발(주)
어경선



금속구조물·창호
(주)금맥공영
김정조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주)에이탑이엔지
정진철



철근·콘크리트
삼지건설(주)
이태원



상·하수도설비
(주)연동
반백철



보링·그라우팅
지산특수토건(주)
김형겸



포장
삼덕이엔씨(주)
이삼현



수중
해진건설(주)
이상호



조경식재
(주)원석조경
정성태



조경시설물 설치
경남종합조경
송유경



강구조물
(주)세원이엔지
김세원



승강기설치
(주)조봉
임대근

07
제위원회
【위원장, 연정수】

기획혁신위원회

상 호	대표자
(주)성덕건설(위원장)	김경식
(주)성신창업	김홍수
(주)건양산업	정종원
자산특수토건(주)	김형겸
삼지건설(주)	이태원

고층(애로)해결위원회

상 호	대표자
(주)공간조경(위원장)	정석봉
(주)세원이엔지	김세원
(주)삼강기업	김점식
(주)삼영건설	조경순
경남종합조경	송유경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

상 호	대표자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위원장)	최상대
(주)공간조경	정석봉
(주)세원이엔지	김세원
(주)주일건설	박강일
(주)라인그룹	김원봉
(주)제일공사	박수근
(주)금맥공영	김정조
(주)라이프하우징	이형민
수영석재산업(주)	문기찬
동림건설(주)	최문학
(주)금천엔지니어링	장상철
천지개발(주)	임철규
신우개발	김문곤
(주)금원건설	정영근
(주)삼강기업	김점식
(주)금호지질	허성하
(주)동해공영	이상백
(주)동아피앤씨	홍종욱
동신창호유리상사	이기호
(주)성신창업	김홍수
(주)건양산업	정종원
자산특수토건(주)	김형겸
(주)삼영건설	조경순
경남종합조경	송유경
(주)금광이엔지	오동진
(주)덕재건설	김운석



01 힐링 캠프 바다를 품은 사찰, 해동 용궁사!



고려시대 1376년(우왕 2)에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懶翁) 혜근(惠勤)이 창건하였다. 혜근이 경주 분황사(芬皇寺)에서 수도할 때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인심이 흉흉하였는데, 하루는 꿈에 용왕이 나타나 봉래산 끝자락에 절을 짓고 기도하면 가뭄이나 바람으로 근심하는 일이 없고 나라가 태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이곳에 절을 짓고 산 이름을 봉래산, 절 이름을 보문사(普門寺)라 하였다.

그후 임진왜란의 병화로 소실되었다가 1930년대 초 통도사의 운강(雲崗)이 중창하였다. 1974년 정암(殿菴)이 부임하여 관음도량으로 복원할 것을 발원하고 백일기도를 하였는데, 꿈에서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용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하여 절 이름을 해동용궁사로 바꾸었다.

현존하는 건물은 대웅전을 비롯하여 굴법당·용왕당(용궁단)·범종각·요사채 등이 있다. 대웅전은 주지 정암이 1970년대에 중창하였다. 대웅전 옆에 있는 굴법당은 미륵전이라고 하여 창건 때부터 미륵좌상 석불을 모시고 있는데 자손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자손을 얻게 된다 하여 득남불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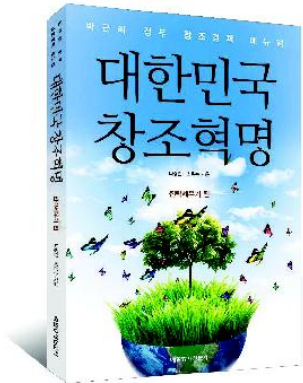
이밖에 단일 석재로는 한국 최대의 석상인 약 10m 높이의 해수관음대불, 동해 갯바위 부처라고도 하는 약사여래불이 있다. 절 입구에는 교통안전기원탑과 108계단이 있고, 계단 초입에 달마상이 있는데 코와 배를 만지면 득남한다는 전설이 전한다.



종파 대한불교조계종
창건시기 1376년(우왕 2)
창건자 혜근
소재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16-3

02 **힐링**
도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매뉴얼 대한민국 창조혁명 - 전략세우기 편



- 제 목 대한민국 창조혁명 전략세우기 편
- 지은이 나성린·최은수
- 장 정 무선철
- 쪽 수 304쪽
- ISBN 979-11-5542-045-4 (13320) / 979-11-5542-047-8 (set)
- 부 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매뉴얼
- 출간일 2013년 10월 30일
- 판 형 신국판(152*225)
- 가 격 14,000원

CREATIVE ECONOMY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란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설명한다.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모델로서 '창조'를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걸까. 《대한민국 창조혁명》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을 A부터 Z까지 낱알이 파헤친 '창조경제 설명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창조'란 화두를 사회에 던지고 있는 것일까? 창조경제는 무엇이고, 창조경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 《대한민국 창조혁명》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완벽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창조적 발상을 통해 개인과 기업, 국가의 성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해법까지 제시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은 물론 대통령 후보시절 유세현장에서, TV토론회에서 쏟아냈던 '창조경제에 대한 발언록' 1,000여 페이지를 종합 정리했다. 동시에 대통령 후보로서 내놓았던 공약, 대통령이 되어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창조경제 로드맵', 수석비서관회의·국무회의·언론사 간부와의 간담회 등에서 강조했던 '창조경제 해법'을 모두 담았다. 여기에 17개 정부부처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추진할 예정인 2,000여 페이지의 '창조경제 실행계획'을 이 책에 모두 소개했다.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창조경제의 새로운 물결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의 여젠다로 제시한 창조경제는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성장중심 모방형에서 선도·창의형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 행복이다. 다시 말해 창조경제는 산업화사회와 정보

화사회의 뒤를 잇는 지식기반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틀림없다. '창조경제'는 정부가 바뀌며 매년 그렇듯 변화하는 정책 중 하나가 아니다. 이 물결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커다란 혁명이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그렇게 지었다. 이미 창조경제를 통해 재미를 본 국가와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들에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얻기 위해선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정책통 나성린 의원과 최은수 MBN정치부장이 직접 분석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매뉴얼!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공약을 만들어내는 데 참여했던 나성린 국회의원과 18대 대통령 선거방송 및 창조경제 보도를 총괄했던 최은수 MBN 정치부장이 손을 건넜다. '창조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루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이 책만 읽어도 창조경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실천에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매뉴얼'이란 콘셉트로 작성됐다. 《대한민국 창조혁명》은 모두 두 권으로 구성됐다. 그 중 '전략세우기편'은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21세기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경영은 물론 국가경영, 개인의 삶에서 '창조'란 화두를 통해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재창조한 사례를 제시하고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론은 무엇인지, 창조경제를 통해 어떻게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기업과 국가, 개인은 어떤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탈바꿈해야 하는지 등을 분석해서 소개한다.

세상을 바꾸는 5가지 빅 체인지

- 빅 체인지 1.** 국가와 사회, 조직의 넥스트 패러다임 수직(One-way)사회 ⇒ 수평(Two-way)사회
- 빅 체인지 2.** 공급자의 넥스트 패러다임 푸시(Push, 공급자 중심)사회 ⇒ 풀(Pull, 수요자 중심)사회
- 빅 체인지 3.** 의사결정 방식의 넥스트 패러다임 좌뇌(Brainstorming) 지배 ⇒ 우뇌(Heartstorming) 지배
- 빅 체인지 4.** 부(富)창조 방식의 넥스트 패러다임 액티브 인컴(Active Income) ⇒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
- 빅 체인지 5.** 네트워크의 넥스트 패러다임 연결사회 ⇒ 초연결(Hyper-connected)사회

코스카레터 창간 기념의 글



(주)거촌건설 대표이사
이상록

- 전국서도민전 초대작가
- 사)한국서화협회 추천작가
- 전국 관설당 서예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 미술대전(국전)서예부분 입선
- 대한민국 서화 예술 비엔날레 대회장상
- 국제 창작미술초대전 특별상
- 한국 추사서예가 협회 초대작가

好雨知時節 當春乃發生
호우지시절 당춘내발생

좋은 비는 내려야 할 때를 알고 있어
봄이 되면 내려서 만물을 싹트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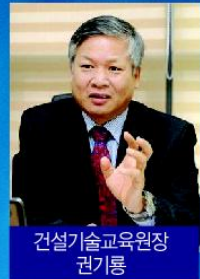
(杜甫 時 〈春夜喜雨〉 中)
두보 시 춘야희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인력 국비지원 무료 훈련생 모집안내

- 01** 전국 최고의 건설기술인력 양성기관으로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가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하여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
- 02** 2014년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축시공 등 4개 직종에 6개월과정으로 60여명이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실시하는 「건설일용근로자기능향상지원사업」에 타일과정 외 1개직종 4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
- 03** 최상의 교육서비스와 최고의 시설을 겸비한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관련 자격증 취득 및 100% 고용창출이 되는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장실무중심의 맞춤형 건설기술교육을 실시, 교육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는 평생직업화 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건설관련분야의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



건설기술교육원장 권기룡

제2기 국비지원 무료 훈련생 모집 안내

과정명(직종코드)	정원	교육내용	자격증취득분야	취업분야
실내건축 (05-02-003)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건축 일반/설비/법규 • 도면작성 및 해독 • 건축목공 • 바닥/벽체/천장/방수공사 • 견적 및 적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건축기능사 • 방수기능사 • 건축목공기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회사 • 종합인테리어 업체 • 리모델링 업체
건축시공 (05-02-002)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시공일반/법규/안전관리 • 도면해독 및 시공도작성 • 조립식건축 • 방수/도배공사 • 견적 및 적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수기능사 • 도배기능사 • 건축시공기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회사 • 전문건설 업체 • 리모델링 업체
건축설비설계시공 (05-03-012)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배관/위생배관설비시공 • 난방설비시공(보일러 및 온수온돌) • 동관밴딩/동관용접/동관T받기/동관확관 • 전기용접/동관 및 강관용접 • 복합시공-X-L관/PVC관/강관조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수온돌 기능사 • 금속재창호기능사 • 보일러 작업형 기능사 • 공조냉동 기계분야 기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회사 • 난방/가스설비 업체 • 시설관리직 • 철재창호시공업체
특수용접 (07-01-007)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용접(CO2/TIG-MIG/서브머지드용접) • 자동/수동 가스절단/플라즈마절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용접기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 플랜트제조 업체 • 중장비제조 업체 • 조선업체



- **모집기간** : 2014. 6월 예정
- **교육일정** : 2014. 8월말 교육개시예정
- **접수방법** : 방문 및 팩스, 우편, 홈페이지(www.busancte.or.kr)접수
- **문의**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99-1(구, 덕천동 18-5)]
T. 051-330-8100~5 F. 051-330-8110

봄철, 알레르기의 습격

눈, 코, 피부 온몸을 위협하는 봄철 알레르기 예방법

주말을 이용해 가까운 공원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온 주부 박모(38)씨 가족. 따뜻한 봄 별을 찍며 아름다운 꽃들도 감상하고 오랜만에 '힐링'을 한 기분이다. 그러나 나들이를 다녀온 후 박 씨의 일곱살 난 아들이 피부를 '벅벅' 긁기 시작한다. 흔한 아토피도 없던 아이인데, 걱정이 되어 피부과를 가보니 의사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진단했다.

평년보다 벚꽃 개화 시기가 2주 가량 빨라질 정도로 외출하기 좋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봄나들이를 떠난 가족들이 늘면서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환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눈, 코, 피부 등에 증상이 쉽게 나타나 알레르기 질환을 자주 겪는 사람이라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꽃가루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과 그 예방법을 알아보자.

나들이 후 피부가 울긋불긋해진다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의심

꽃가루 알레르기는 보통 눈, 코와 같은 부위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부 또한 영향을 받는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피부에 닿았을 때 붓거나 가려워지는 질환인데,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심해진다.

봄이 되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는데다 날씨가 풀리면서 피지 분비가 많아져 유·수분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세먼지나 황사까지 날리면 노출 부위에 자극이 심해진다. 초반에는 피부가 가렵고 빨갛게 변하고, 수포나 부스럼 또는 딱지가 생기는 증상이 나타난다. 다른 알레르기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물질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으로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항원을 파악한 후 차단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봄철 꽃 나들이와 같이 장시간 피부가 노출될 때는 긴팔을 입어 직접적인 노출을 피하고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도록 한다. 외출 후에는 샤워를 해 외부 오염 물질을 씻어내는 것이 좋다.

일주일 이상 콧물, 재채기 계속된다면 감기 아닐수도

봄철에는 콧물, 재채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으레 감기라고 착각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봄철 환절기에는 실제로 감기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지만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인 만큼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도 무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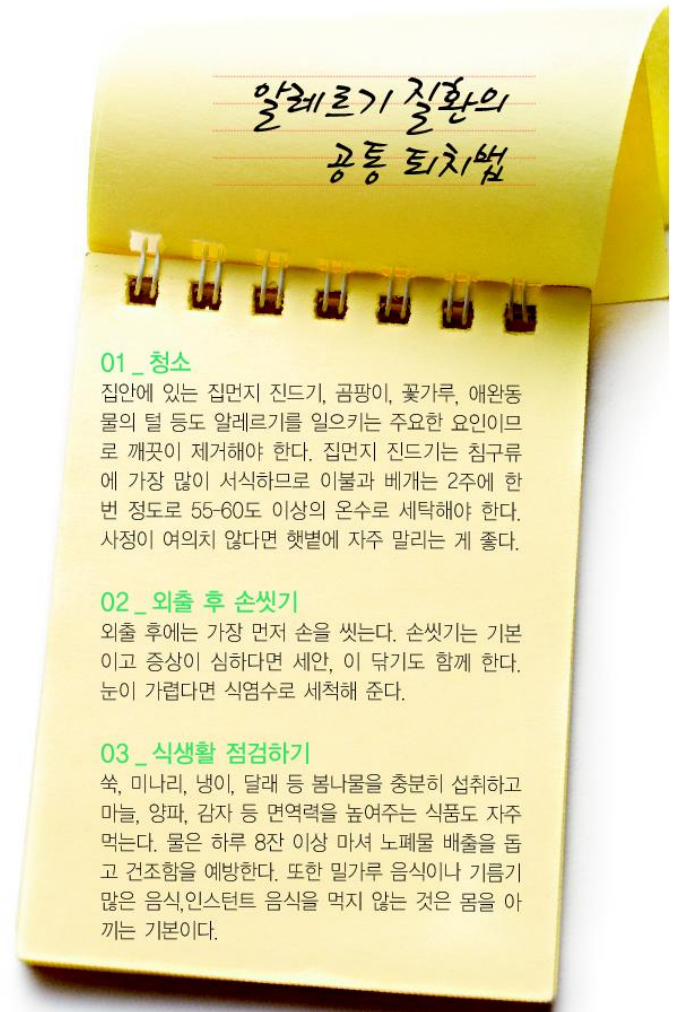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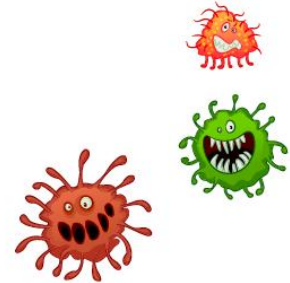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대기오염 물질, 동물 털 등이 코 점막 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이외에도 코 주위 가려움, 두통, 후각 감퇴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라면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터가 내장된 마스크를 착용해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외출 후에는 꽃가루를 털어내고 몸을 청결히 한다. 일주일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면 감기가 아닌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전문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 올바른 치료를 받도록 한다.

꽃가루에 오염 물질까지 더해져 알레르기 결막염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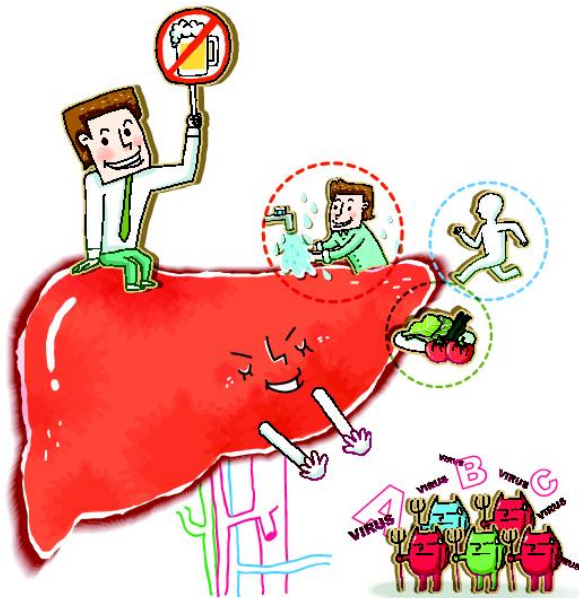
봄철 나들이를 나서면 유독 눈물이 자주 나고 눈 주위가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곤 한다. 증상이 일시적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상이 반복된다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봄철 알레르기 결막염은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등이 주요 원인으로 오염 물질이 눈에 들어가 눈꺼풀과 결막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특히 최근에는 꽃가루가 황사, 미세먼지 등 도시 공해와 결합해 독성을 띄는 경우가 많아 노출될 경우 더욱 위험하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이물감, 가려움, 충혈, 시린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결막이 부풀어 오른다. 이때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각막 궤양이나 각막 혼탁 등이 나타나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청결하지 않은 손으로 눈을 비빌 경우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간 건강을 지키는 생활수칙

평소 퇴근 후 잦은 술 약속이 아니더라도 우리몸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간 건강을 지켜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간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어 이상이 생겨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간을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체중 유지하기

과도한 알코올 섭취만이 지방간의 원인이 아니다. 과도한 음식 섭취 또한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과식을 하면 그만큼 간은 더욱 무리해 한꺼번에 음식물을 대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많은 열량을 섭취하면 비만이 되기 쉽고 간에 지방이 쫄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2004년 전체 지방간 환자의 11%에서 2010년 2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비만 환자 중 50% 이상은 지방간일 정도로, 과체중은 지방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이 중요하다.

금연하기

간 건강을 지키려면 금연은 필수다. 흡연을 하면 담배의 유독 물질을 해독하느라 간이 혹사당하면서 간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이다.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금연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물을 하루 2ℓ 이상씩 충분히 마시면 몸 안의 담배 유해물질을 녹여 소변으로 배출 할 수 있다. 또 시금치나 오이, 당근 등의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이나 파래의 메틸 메타오닌 성분, 녹차의 카테킨 성분도 기관지와 폐점막을 재생하도록 해주고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2008년 미국의 지나 데이 스티븐스 박사는 일주일에 십자화와 채소를 두 번 먹은 대상자는 소변 내 담배독소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일주일에 두번이상 이 같은 채소류를 섭취했을 때는 독소 농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은콩은 장기간의 흡연으로 손상된 간 기능을 회복시켜 주고 체내에 쌓인 독성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장은 혈액 내 니코틴을 분해한다. 고등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이나 오징어, 문어 등 오메가 지방산이 많은 어류도 금연에 도움이 된다. 반면 탄산음료나 술, 커피 등은 흡연 욕구를 부추기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일주일에 두번 이상 최소 30분은 운동하기

과로와 야근,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도 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제때 쉬지 못하고 몸에 피로가 쌓이면 간은 독소를 해독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간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충분한 휴식과 간단한 유산소운동을 병행해 주는 것이 좋다. 지방간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지혈증, 비만, 당뇨 등은 모두 평소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간 해소를 위해서는 유산소운동이 효과적이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조깅 등이 모두 유산소운동에 해당한다. 칼로리 소모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추천된다.

2014 부산 조경·정원박람회

2014. 6. 19(목) ~ 6. 22(일) 벅스코 제2전시장(신관) 1층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K 국제신문 부산일보사 KNN

주관 :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시회 BEXCO

후원 : KOSCA (사)한국조경사회 한국공원시설협회
 (사)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 대안주택관리사업회 부산시회

미디어협력 : 한국조경신문, 라펜트, 조경세계, 건축세계, 전원생활

문의 : 051)740-8900, 7418 (www.landscapebusan.co.kr)

‘2014 부산 조경·정원박람회’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80개사 330부스 규모로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

조경산업 전반의 최신 트렌드를 조망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있는 최적의 Market place를 제공하는 ‘2014 부산 조경·정원박람회(Landscape & Garden Show Busan 2014)’가 오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벅스코 제2전시장(신관)에서 열린다.

조경 및 정원 산업의 육성과 관련 업체들을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제공,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부산광역시, KNN(부산경남방송), 국제신문, 부산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시회와 벅스코가 공동 주관한다.

에넥스트, 동아조경, 테마월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조경업체와 유니온랜드, 예건 등 80여개사가 330부스 규모로 참여하여 새로이 개발된 퍼걸러, 벤치,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친환경 놀이시설물, 생태복원기술, 벽면녹화, 빗물저장시설, 잔디보호재, 개량토

및 기타 조경정원 용품과 자재들을 전시한다. 부산광역시 및 박람회 사무국에서는 전국 시도 조경·토목담당 공무원, 공공기관 담당자,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조경 설계 및 시공사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참여기업들과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녹색도시포럼, 부산경남 지역대학(동국대, 동아대, 부산대, 영산대) 조경학과 졸업작품전과 기술 및 신제품 발표회가 개최된다. 아울러, 박람회 사무국에서는 부산예술총연합회 꽃작가협회, 부산화훼기사장식협회 등 관련 협회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들과 협업하여 시민들을 위한 정원특별관을 구성할 예정이다. 다육식물 심기, 도예 및 물레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도 준비되어 있어 시민들이 박람회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행사기간 선착순으로 매일 관람객 1,000명에게 무료로 초화를 나눠준다.

회원사참여마당

KOSCA부산광역시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코스카레터」는 우리나라 건설산업 관련제도의 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매거진입니다.
메일을 통해 다양한 독자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발간후기

“어떻게하면 회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바쁜 회원사의 임직원들이 각종 제도와 정보, 변경된 법령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꽂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는 분기 소식지를 만들자!”

막상 결심을 하고 보니 첫 일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많은 시간이 투입되었습니다. 3분기부터는 차질 없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여러분의 활동과 분과회의 소식도 알뜰하게 소개할 것입니다. 회원사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개선 의견을 바라겠습니다.

2014년 5월
부산광역시회 사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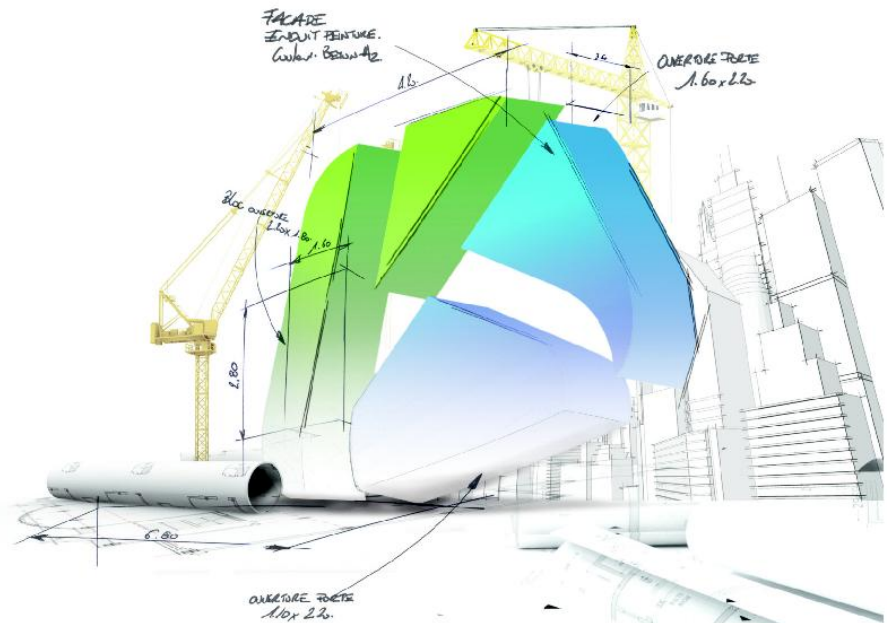
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 설명

- 탄탄한 베이스를 상징하는 사각형 형태의 입체 블록을 통해 협회가 신뢰를 주는 안정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
- K를 블록 상부에 표시하여 회원 업체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협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

색상 설명

- 녹색은 친환경적 건설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미
- 청색은 보다 무한한 분야로의 진출을 의미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전문건설회관 4층)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